

양성 과정을 끝냈으며 2년 과정의 졸업자가 이끄는 워크샵, 토의, 드라마 등의 연출 방법을 통해 필리핀 이주민 여성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있다. 필리핀인들이 계속해서 영국과 다른 나라에 이주하고 있는 한편 그들의 인권 및 노동 권리의 침해도 증가하고 있다. 소수 인종은 예산 삭감과 복지 서비스 축소에 맞서야 한다. CFMW는 필리핀 이주민의 평등, 보호를 위해 캠페인과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런 노력을 통해 전체 공동체의 연대와 참여를 이끌어내고 다른 단체들의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G7: 영국

새로운 집 짓기

비시 아델레이-파예미

그들은 놀이에서 잠깐 자신을 때리도록 할진 몰라도 우리에게 완전한 변화는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

- “주인의 도구는 주인의 집을 해체하지 않는다”

오드르 로드(1934~1993)

나는 EU 여권을 가지고 있다. 이민 지점을 지나다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질문을 받으면 나는 여권을 보여준다. 그러면 그들은 “그래요, 당신이 영국 여권을 가진 것은 알겠는데 정말로는 어느 나라 사람이죠?”라고 묻는다. 여기에 대한 나의 대답은 이렇다.

어디에서 왔냐구?
제발 묻지 말아줘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여기에 있어
당신이 여기에
저기에, 어디에나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여기
저기, 어디에나
있을 권리가 있어.

전 세계의 흑인과 유색인들이 수 세기 동안 겪은 노예 제도, 식민지배, 제국주의를 사람들에게 상기시킬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전통적인 생각과는 반대로 노예 제도와 식민지배는 잊혀진, 오랜 과거의 메아리나, 좌절감을 느낀 소수 민족 지도자가 구성원들의 “의존성”, “계으름”, “편부모”, “범죄”,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상기시키는 개념이 아니다. 노예 제도, 식민지배, 제국주의, 신식민주의는 여전히 존재하며 이 때문에 남반구 전체와 북반구의 많은 공동체가 빈곤하며 기본적인 자원과 여가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1991년에 출판된 아프리카 경제 회복과 발전을 위한 유엔 행동 계획(UNPAARED)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에 4억의 아프리카인들이 빈곤하게 살 것이며 이들 중 2억 6천만 명이 여성일 것이라고 한다. 세계적 경제 재편은 세계은행과 IMF 같은 국제적 금융 기구가 끊임없는 외채 제공과,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체계를 황폐화시키는 구조조정 계획(SAPs)으로 아프리카를 다시 식민지화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SAPs는 사회보장의 대규모 축소, 실업, 인플레이션, 삶의 질 저하, 대량의 인재 고갈을 가져왔다. 아프리카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간, 고급 수준의 관리자들이 더 나은 작업 환경을 찾아 아프리카를 떠나고 있다.

지난 수 년간 아프리카를 괴롭힌 끊임없는 분쟁과 전쟁은 이 대륙을 절망적인 상태에 빠뜨렸다. 이 분쟁의 원인은 복잡 다양하다. 요인은 자원, 권력, 인종, 민주화, 기타 가치의 점유를 들려싼 투쟁들이 결합된 것이다. 여기에는 또한 냉전기간 중 이념적 우위를 위한 싸움에서 아프리카를 전장으로 이용한 세계 열강의 개입이 있다. 독재적, 전제적 통치는 이데올로기적 영토 경쟁의 지원을 받고 고도의 군사장비와 수십억 달러의 외채 세례를 받았다. 이 돈은 즉시 스위스 은행에 안전하게 저장되었다. 이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도달했다. 지금은 빚을 갚아야 할 시점이고 우리들은 모두 상상 가능한 가장 지독한 고통과 빈곤의 악순환에 사로잡혀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구조 조정 계획이 적용되는 것이다. 아프리카 인들은 끝없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 수 년간 끌어모은 무기를 이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1500만의 세계 난민의 75%를 아프리카가 차지하고 있다. 보건 체계의 파탄으로 인해 아프리카인들은 아프리카의 동부, 중부, 남부를 황폐화시킨 HIV/AIDS의 창궐에 대처할 수가 없다. 이 모든 복잡한 문제들은 전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결함있는 체계에는 항상 그로 인해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다. 아프리카 대륙의 상황으로 인해 많은 아프리카 난민, 추방자, 학생, 이주민이 서유럽에 진출하게 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동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이전 세기보다 더욱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노예제 혹은 식민지화의 재순환으로 되었다. 현재 수백만의 여성들이 가정부, 청소부, 공원으로 일하고 있거나 상업적 섹스 산업에 매매되고 있다. 북반구가 남반구에 작용하여 한 경제 구조조정 정책은 자신들의 나라에서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으며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위협한다고 여겨지는 소수 인종, 빈민, 남편 없는 어머니, 기타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편리한 희생양이 되고 있다. 이 글의 맥락에서 북반구에 대한 나의 정의는 주로 백인, 남성, 상류 지도자, 대기업의 이익, 초국적 기업을 의미한다. 동질적인 남반구가 존재하지 않듯 동질적인 북반구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타락하고 외국과 손잡은, 아프리카인들의 지

도자들도 책임이 있다.

나의 조직 아키나 마마 와 아프리카는 1985년 영국에 사는 아프리카 여성들을 돋기 위한 단체로서 출발했다. 당시 문제를 공유하고 도움을 청할 친숙한 문화적 환경을 아프리카 여성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복지 및 긴급한 서비스를 몇 년 동안 제공한 후에 우리는 주인의 집에서 나갈 때가 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주인에게 지붕이 새고 문은 바꿔줘야 하며 하수도는 냄새가 난다고 말하기를 원했다. 우리는 변화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형성하는 데 우리 자신이 직접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는 정체 회의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이 일을 시작했을 때 받은 정중한 시선을 볼 때, 언젠가 우리가 주인의 면전에 대고 우리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키나 마마 와 아프리카에서 우리의 일은 세계를 제대로 인식하고, 유럽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우리 공동체 내의 모든 여성들의 삶에 이 인식이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후원, 정체, 국제적 봉사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에서 투쟁은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내적으로 돋립적이라는 것을 배웠다. 보수적인 국제적 이윤의 확대하고도 집중적인, 막대한 압력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전세계의 여성들은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 여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지배하고 경제권과 신체보전의 존중 같은 기본적인 인권을 빼앗는 체제에 대해 철저하게 이해해야 한다.
- 여성들은 정치적 업적의 도구로써 종교를 이용하는 구조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재검토해야 한다.
- 여성들은 변화의 주역으로 행동할 능력을 길러야 한다. 베이징 이후의 과정에서 국제적 여성 운동은 행동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을 동원하고, 동시에 베이징 회의에서 받아들인 수단들을 지지해야 한다.
- 인종주의와 기타 형태의 차별이 국제적 여성 운동에 아직도 널리 퍼져있다. 우리는 결손과 성실성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하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의 고유한 특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다른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한다. 여성의 연대는 국제적일지도 모르지만 여성들은 동일하지 않으며 각자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
- 페미니즘 운동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회적 힘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키톨릭, 이슬람 근본주의자, 기독교 근본주의자, 임신중절 반대론자, 대기업의 경제적 이익,

기타 우익적 부문 등 강력하고 보수적인 부문들이 자신들의 권력과 특권을 위협하는 이 운동을 총력을 다해 분쇄하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지방적,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여성들이 지속적인 연대를 조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몇 달 전에 나는 나이지리아에 계신, 일흔이 되신 나의 할머니에게 편지를 보냈다. 할머니께서는 과부이자 농사꾼이사다. 할머니는 시골에 사시며 글을 읽지 못하신다. 그리고 한번도 중국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없다. 나는 할머니에게 베이징 회의와 우리의 목표에 대해 말씀드렸다. 할머니께서는 다른 사람을 시켜 답장을 받아하게 하셨고 나는 요루바어로 쓰여진 그 글을 번역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자의 고통에 관하여 뭔가가 이루어진다니 기쁘다. 우리 때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중요하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남자들의 시중을 들어야 한다고 교육을 받았단다. 이제 나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영원히 부드러워 지지 못할 정도로 딱딱한 것은 없단다. 남자의 바지 속에 여자의 머리 속에 있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단다. 불가능한 일은 없단다. 잘 지내고 건강히 돌아오너라. 그리고 선조들의 영혼이 너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주인의 집이 아니라, 인간성과 인류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우리가 진정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장소를 만들 새로운 연장을 여성과 남성이 만들 수 있는 세상을 나는 꿈꾼다.

아키나 마마 와 아프리카에 관하여

아키나 마마 와 아프리카(AMwA)는 범 아프리카적 비정부 개발 기구이며 등록된 영국 자선단체이고 아프리카 각지의 여성에 의해 1985년에 세워졌으며 영국에 있다. 스와힐리어에서 번역된 이 이름은 ‘아프리카 여성의 연대’를 뜻하며 아프리카의 자매를 가리킨다. 아키나 마마 와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여성들이 자율적으로 조직을 만들고 자신들의 관심사를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다.

AMwA의 목표는 개발 부문에서 활동적인 아프리카 여성들에게 연대, 지원, 자각을 제공하고 유대관계를 맺는 것이다. 아프리카 여성들의 기구는 자신들의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킬 수단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우리는 아프리카와 북반구의 여성 단체와 유대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네트워크가 필수적인 발전 도구라고 생각한다. AMwA에는 다섯 명의 상근 직원과 열두 명의 집행부가 있으며 세계 각지의 여덟 명의 여성으로 이루어진 국제 자문 위원회가 있다. 후원, 정보 네트워크, 훈련 제공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AMwA는 공동체 발전, 인권, 교육 연구, 국제

적 발전 등 네 부문의 계획을 갖고 있다. 우리의 중요한 사업을 다음과 같다.

아프리카 난민 여성 사업

소말리아, 라이베리아, 르완다,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에서 진행중인 경제적, 정치적 위기로 인해 많은 아프리카 여성들이 현재 영국에서 살고 있다. 대부분은 난민, 망명자, 이주민으로 이곳에 왔으며 유일한 가장인 경우가 많다. 여기에 더해 최근 난민, 복지, 법률적 도움 등의 문제에 관한 영국 정부의 정책이 크게 바뀌어 아프리카 난민과 망명 요청 여성들을 위한 후원 작업이 전에 없이 증가했다. 특히 법률적 도움이 많이 늘었다. 영국 내의 아프리카 난민 여성을 위한 AMwA 계획은 다음을 포함한다. 당명 문제, 난민의 권리, 복지 문제에 대한 조언 및 정보 제공, 교육, 취업, 훈련에 관한 정보와 지원, HIV 예방 등 건강 증진을 위한 훈련자 양성, 상담 제공, 아프리카 여성을 위한 보건, 공동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부 부처와의 후원 및 정책 작업.

법률상담 센터

법률상담 센터는 AMwA의 선도적 서비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다. 아마도 정부 정책의 변화의 결과로 인해 법률상담 센터의 서비스의 수요가 극적으로 증가했을 것이다. 센터는 매주 원요일 저녁 자원 변호사에 의해 무료 법률상담소로 운영된다. 법률상담 센터는 영국 변호사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운영되고 있다.

HIV 예방 훈련

AMwA는 아프리카 공동체에 의해 제공되는 HIV/AIDS 예방과 의료 서비스에 작절한 성적 시작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걱정했다. 이게 대한 우리의 대응은 아프리카 여성과 보건 전문가를 목표로 하는 HIV 예방 훈련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훈련 과정은 다음을 포함한다. – 기본적인 HIV 인식, 아프리카 여성과 HIV, 효과적인 소통 및 안전한 섹스 교육, 건강 옹호 및 건강 증진의 대안적 언론 수단.

아프리카 여성 수감자 계획

아프리카 여성 수감자 계획의 발견에 따르면 영국 수감자 중 아프리카 여성의 수가 특히 마약 거래에 관해서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 계획에 대한 우리의 활동은 아프리카 기구들과 연대하여 마약 거래에 반대하는 전국적 운동을 벌이는데 집중되어

있다. 이는 영국/유럽 감옥에 수감되는 아프리카 여성의 증가를 억제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법률 조언, 상담, 해당 기관에 대한 항의를 통해 수감 중인 여성들 지원하고 있다.

피부 탈색에 반대하는 운동

피부 탈색에 반대하는 포스터, 전단 캠페인은 우리의 성공 사례 중 하나인데 이것은 주로 언론의 관심 덕분이다. 처음에는 흑인 여성들 대상으로 했지만 우리는 매우 광범위한 목표를 설정했다. 흥미있는 사실은 유럽의 백인 여성들이 정보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타이와 남아프리카 등에서도 요청이 들어왔다. 우리는 세계 다른 지역에도 피부 탈색이 널리 퍼져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캠페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조만간 새로운 포스터, 전단, 언론 수단을 통해 운동을 다시 전개할 생각이다.

아프리카 음식 및 영양

이 특수한 계획은 영국과 웨일즈에서 심장 관상동맥 질환, 심장 발작, 당뇨병을 앓고 있는 아프리카인들이 특이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음식과 영양에 관해서는 정보와 자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에 의해 시작되었다. AMwA는 아프리카 음식에 관한 짧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아프리카 음식과 영양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는 아프리카 공동체 내의 관상동맥 질환, 심장 발작 예방을 위한 장래 계획의 일부가 될 것이다.

정신 건강/가정 폭력 계획

정신 질환과 쇠약은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요인에서 발생하며 여성의 정신 건강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인종, 문화, 장애, 성 정체성, 나이, 계급에 기반을 둔 억압에 의해 악화된다. 우리의 도움을 청하는 가정 폭력 희생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AMwA의 정신 건강/가정 폭력 계획이 세워졌다. 우리는 여성에게 중점을 두는 상담, 심리적 지원 서비스를 발전시켰다. 이것은 여성의 심리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환경과 연관시키는 시각을 배운 아프리카 여성에 의해 아프리카 여성에 대한 개인적 집단적 요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권

난민, 이주민, 망명자, 학생, 남편로서 아프리카를 떠나 유럽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 여성에게는 많은 다양한 관심사가 있다. 게다가 아프리카와 유럽의 이중 국적을 지닌 아프리카인 세대가 유럽에서 자라났으며 이를 또한 여러 형태의 차별을 겪고 있다. 인권 침해의 사례는 가혹하고 차별적인 이민법, 인종주의적 학대, 난민과 망명자의 운명, 여성 인신매매, 아프리카 여성 가사 노동자의 고통, 고용의 기회 부족, 다른 문화 정책의 반대되는 의미 등이다. AMwA는 문화적, 사회적, 정신적 믿음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여성 성기 손상이 여성 인권의 근본적인 침해이며 소녀들에게 참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믿는다. AMwA는 서민 공동체를 위한 교육 전략,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소득 생산 계획, 모든 형태의 여성 성기 손상을 금지하는 입법, 정책을 수행하려는 정치적인 의지의 결합을 옹호한다.

유럽의 아프리카 여성 네트워크

AMwA는 유럽 위원회로부터 유럽의 4개 언어로 소식지를 발간하기 위한 기금을 받았다. 유럽에서 아프리카 여성의 활동에 중점을 둘 이 소식지는 '시스터링크'라고 불린다. 1992년 8월 AMwA는 런던에서 처음 열린 유럽의 아프리카 여성 회의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스위스, 아프리카, 미국에서 왔다. 유럽의 아프리카 여성을 위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결의문이 통과되었다. AMwA는 자유로운 기반에서 운영되는 네트워크와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전략적인 유럽 및 국제적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동시에 유럽의 흑인, 이주민, 망명자, 난민 여성들(BWEN)이 설립되었으며 여성들은 BWEN을 유럽의 다른 소수 인종 여성들과 접촉하고 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프리카 여성의 리더쉽 기관

아프리카 여성의 리더쉽 조직(AWLI)은 지역적 네트워크, 정도, 훈련 세미나이며 25~40세의 여성들에게 성문제, 조직 및 수단 개발, 전략 계획에 관한 비판적 사고를 훈련시킨다. AWLI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첫째 AWLI는 전문적 지원, 조언,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전문적 의견을 공유하는 25~40세의 젊은 아프리카 여성들의 네트워크가 될 것이다. 둘째 AWLI는 매년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 집중적인 3주 과정의 거주 리더쉽 훈련 기관을 설립할 것이다. AWLI의 궁극적인 목표는 상당수의 여성을 고무하고 훈련시켜 진보적인 아프리카 여성의 발전 의제를 촉진할 지도자 위치에 오르게 하는 것이다. 다음 세대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들 사이의 페미니즘 지지

자의 발전은 아프리카 여성 운동의 미래에 필수적이다.

아키나 마마 와 아프리카가 존재하는 동안 우리의 꿈은 유럽의 주도적인 아프리카 여성 비정부 개발 기구가 되는 것이었다. 우리는 아프리카 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해 우리의 기구와 북반구에 기반을 둔 아프리카 여성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아프리카에서와 이민자로서의 유럽에서 아프리카 여성의 역할을 분석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비 유럽중심적인 토대를 만들어왔으며 대륙 밖에 사는 아프리카 여성의 전문 기술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몇 년이 지나자 우리의 꿈은 확대되었고 우리는 이제 아프리카와 강력한 유대관계를 가지는 지도적인 유럽 내 아프리카 여성 비정부 기구가 될 계획이다. 우리가 짓고자 하는 집의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꿈을 실현할 길 위에 서 있다.

G7: 미국

매맞는 이민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 전략

레니 마린

오늘날 미국에서 여성과 아이들은 총 합법 이민자의 대략 3분의 2를 차지한다. 이것은 새로운 이민자의 60내지 70퍼센트를 남성 이민자가 차지했던 1930년 이전과는 판이한 대조를 이룬다. 당시 미국은 남성 노동자만은 선호하고 모집했기 때문에 여성은 이민이 어려웠다.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가족이 없는 독신 남성은 노동이 필요 없어지면 쉽게 추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여성 이민자의 증가는 그 자체로 미국의 노동력 요구가 변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미국이 산업 경제에서 서비스 경제로 변함에 따라 저임금, 미숙련 직업이 생겨났고 이주민 여성들이 모집되고 있다. 여성은 또한 미국에 체류하는 불법 이민자와 난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그들 중 상당수 특히 개발도상국 출신의 불법 이주민 여성은 미국에서 고립되어 언어, 문화, 법, 사회 체계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주민 여성은 성, 인종, 이민 상황에 기반을 둔 세 배의 차별 부담을 겪고 있다. 점증하는 증거는 많은 여성들이 폭력적인 관계에 빠지고 고립되어 도움을 청하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북 캘리포니아 이주민 및 난민의 권리와 서비스를 위한 연대의 이주민 여성 특별 조사단(CIRRS)의 보고에 따르면 피조사자 중 34%의 라틴 여성가 25%의 필리핀 여성이 출신국과 미국 양쪽에서 가정 폭력을 경험했다. 매맞는 이주민 여성은 복잡하고 가혹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다음의 간략한 사례들은 그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보여준다.

◎ 과테말라 출신 여성인 칼라는 5년간 합법적 영구 체류자인 남자친구와 살았다. 그녀가 자신의 법적인 체류를 요청하기 위해 결혼하자고 말하자 그는 그녀를 때록 그녀가 단지 이민 지위를 얻기 위해서 그와 살기를 원하는 거라고 비난했다.

◎ 중국 여성인 타이 린은 폭력적인 남편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도움을 찾는 데 어려

움을 겪고 있다. 그녀는 노동 허가가 없기 때문에 공장의 일자리를 잃었다. 그녀가 찾아간 이민 서비스 기관은 남편과 함께 지내도록 조언했으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충고했다. 게다가 그녀는 광동어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녀가 방문한, 매맞는 여성의 피난처는 그녀와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다.

※ 불법 이주민인 필리핀 여성 레티사는 법원에 가서 폭력적인 남편에 대한 제한 명령을 얻어냈다. 그녀의 남편이 제한 명령을 어기고 그녀의 집에 오면 그녀는 경찰을 부른다. 남편은 경찰이 오기 전에 도망친다. 그녀가 도움을 청한 관리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녀의 입국 허가증을 요구한다.

이러한 사례들로 인해 가정 폭력 방지 기금(FUND)이 1990년 매맞는 이주민 여성의 권리 계획을 설립했다. 이 계획은 네 가지 주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1. 매맞는 이주민 여성과 자녀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국가적 공공 정책과 국제적 수단을 발전시키고 옹호한다.
2. 문화적, 언어적으로 접근 가능한 수단과 매맞는 이주민 여성에 직면하는 특정 한 문제들에 더 잘 대처하기 위한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3. 매맞는 이주민 여성에 직면한 복잡한 문제와 언어, 문화, 이민법 등의 장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킨다.
4. 지방적,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매맞는 이주민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통합하기 위한 네트워크와 연합을 조직한다.

이 계획의 임무는 특히, 우익 정치가, 조직, 개인의 활동에 의해 조장된 반이민 정서와 외국인 혐오증에 의해 변해왔다. 캘리포니아의 제안 187호와 같은 주법의 문구는 이민자에 대한 공격의 분명한 예이다. 그 법안은 불법 이민자에게 보건, 교육, 기타 사회적 서비스를 거부한다. 이 발의는 다른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보다 제한적인 정책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국내 정치가들에게는 청신호가 되었다.

그 결과는 합법 이민자와 불법 이민자에게 똑같이 재앙이었다. 최근에 통과된 복지와 이민 개혁에 관한 연방법은 합법 이민자와 불법 이민자 양자에 대한 공공 복리를 거부한다. 매맞는 이주민 여성에 관해 이는 가혹한 의미를 갖는다. 자신과 자녀들의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보호막은 부족하고, 폭력적인 남편에게 돌아가라는 압력을 막대하다. 그녀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위험할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 그녀가 폭력으로 인해 장애를 입더라도 그녀는 장애인 지원의 혜택을 입을 수 없다.

1989년 이후, 매맞는 이주민 여성의 법적 권리와 기본권의 후원회들은 가정 폭력을 겪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반응하기 위해 미국 이민법의 공공 정책 개혁의 필요성에 중점을 두었다. 이민 및 국적법 하에서 미국 시민과 영구 거주자는 남편이 결혼을 통한 법적인 영구 거주를 얻고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관련된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강요되지는 않는다. 미국 시민 및 거주자인 남편은 언제 비자를 청원할지, 그리고 청원할지 말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남편의 영구 거주 보장이 이루어지기 전 어느 때든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남편을 추방의 영원한 위협에 둘으로써 가지게 되는 힘은 시민이자 합법적인 영구 거주자인 가해자에게, 학대받는 이주민 여성과 가족들을 폭력적인 관계에 묶어 들 수 있는 강압적인 도구를 제공한다. 가해자 남편은 부인에게, 경찰의 도움을 청하거나 폭력 행위를 신고할 경우 그녀와 자녀들을 추방하겠다는 협박을 가하기 때문에 많은 이주민 여성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극히 위험한 환경에서 살아간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가장 폭력 피난처로 도망치려고 한다면 가해자 남편은 이민 당국에 가서 그녀의 거주 신청을 취소하고 그녀를 추방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는 부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와 관련된 형법 적용을 피한다.

네트워크와 협력

이런 충격적인 현상 때문에 FUND는 다른 전국적인, 이주민의 권리, 여성의 권리, 가정 폭력에 관한 기구와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여기에는 AYUDA 법인, 국내 변호사 조합의 국내 이민 계획, NOW 법적 보호 및 교육 기금 등이 있으며 이들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조장한 이민법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이런 종류의 협력은 다른 단체들이 매맞는 이주민 여성에게 관심을 기울이도록 참여하게 하는 데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매맞는 이주민 여성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두 법안이 통과되었다.

1) 이민 결혼 사기 수정안(IMFA)

이전 이민법 하에서는 미국 시민이나 합법적인 영구 거주자와 24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결혼생활을 한 이주민 여성은 조건적인 2년 간의 거주 허가만을 받는다. 여성은 영구 거주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이 2년 간의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 90일 이내에 부부가 조건 해제를 위한 공동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이 정책으로 인해 매맞는 이주민 여성은 영구 거주를 얻기 위한, 서류 상의 조건 말소를 위해 2년 간 학대를 감내하고 남편과의 관계에 묶여 있어야 한다.

1990년 IMFA를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매맞는 이주민 여성은 두 번째의 공동 신청 없이도 법적 거주의 조건을 말소함으로써 합법적인 영구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법안(VAWA)

이 법안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매맞는 이주민 여성은 시민이나 영구 거주자인 가해자 남편이 부인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신청을 취소하거나 거부할 경우 가정 폭력에서 벗어날 수단이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1994년 VAWA의 제정으로 매맞는 이주민 여성은 이제 합법적인 영구 거주자가 되기 위해 폭력적인 남편에게 의지할 필요 없이 자신을 대표해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남편이 그녀의 거주 서류 신청을 시작했다가 이후에 신청을 철회했거나 신청이 계류중인 경우에도 영구 거주를 신청할 수 있다. 매맞는 이주민 여성은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 자녀들을 신청에 포함할 수 있다. 시민 혹은 거주자 부모에게 학대받는 자녀들은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대받지 않은 여성이라도 그녀의 시민 혹은 거주자 남편에 의해 매맞는 자녀의 부모인 경우에는 영구 거주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두 법률은 매맞는 여성의 위협하는 정책의 변화에 대한 주요한 승리이며 여성의 삶을 지키는 데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어렵게 얻어낸 정책을 추구하면서, 매맞는 이주민 여성의 후원회들은 주류 여성 운동과 협력 관계를 맺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1991년 이민법을 개정할 전망이 거의 없었을 때 가정 폭력을 조장하는 이민법을 개정할 최선의 수단을 찾는 것은 도전적인 일이었다. 우연의 일치로 여성의 법적 보호와 교육 기금을 위한 전국 기구(NOWLDEF)는 정책 입안자들이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법안을 제정하도록 하는 일에 앞장 서고 있었다. 이것은 미국 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줄이기 위한 주요한 제도적 대응과 수단을 제공하는 주된 연방 법안이었다. 여기에는 가정 폭력 피난처를 위한 보다 많은 기금, 판사 교육, 법률 강화에 관한 공동체와 후원자의 협력, 보다 나은 안전을 위한 공원 조명의 재원 등이 포함된다.

제안된 법안에는 또한 강간이나 가정 폭력 등의 희생자가 된 여성들에게 기본권적 보호를 제공하는 중요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필수적인 조항은 NOWLDEF가 VAWA에서 중점을 둔 부분이다. 하지만 이주민 여성의 견지에서 이 법률안은 매맞는 이주민 여성과 아이들의 보호에 관한 특별 조항을 포함했다면 보다 포괄적일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FUND와 CIRSS의 이주민 여성 특별 조사단의 정책 소위원회 회원들은 이런 조항을 삽입하기 위해 NOWLDEF와 교섭했다.

이 발의는 VAWA의 항목에 기본권적 보호와 매맞는 이주민 여성 조항이 포함되도록 하기 위한 협력을 이루었다. 이 점에서 FUND는 앞서 언급한 기타 단체들과 함께 매맞는 여성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이 비공식적 네트워크는 이민법과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법률의 교차점에서 이주민의 권리, 가정 폭력, 여성의 권리 옹호에 대한 의사소통과 토론을 촉진할 수 있었다. 이 연합은 매맞는 이주민 여성의 보호가 VAWA의 일부가 되도록 보장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연합의 결성에서 VAWA의 마지막 법안에 이르는 3년 간 상원과 하원 사이에는 매맞는 이주민 여성 보호와 기본권 보호에 관해 끊임없는 입장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이 두 법안을 결합하려는 후원회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하원이 채택한 VAWA에는 매맞는 이주민 여성과 아이들의 보호에 관한 조항만을 포함되었을 뿐 기본권 보호 조항은 누락되었다. 반면에 상원의 VAWA 법안에는 기본권보호 조항은 포함되었지만 이주민 여성 조항은 빠졌다. 후원회들은 두 개의 주요한 조항이 의회의 표결에 붙여져 대통령에 의해 법률로써 서명되는 최종 법안에 포함되도록 전략을 세워야했다.

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매맞는 여성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와 NOWLDEF는 두 조항이 최종 법안에 포함되도록 공동 노력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우리는 만약 한 조항만이 최종 법안에 포함된다면 후원회들은 VAWA를 전적으로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상원과 하원 보좌관들과의 협상에서 이 입장이 중요했다. 결국 두 조항 다 법률로 제정된 최종 법안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외국인 혐오증과 반이민 정서에 직면해 있는 매맞는 이주민 여성의 기본권, 법적 권리,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조직적 요소로 가정 폭력 활동가, 긴급 피난처 운동가, 법적 활동가, 이민자의 권리 운동가, 여성의 권리 활동가, 기타 매맞는 이주민 여성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에 보다 많은 교육과 자각이 있어야 한다.

이런 교육 노력 없이는 매맞는 이주민 여성들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것이며 매맞는 이주민 여성들이 자신의 법적 권리와 이용 가능한 공동체의 수단에 대해 무지하게 되어 매맞는 이주민 여성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고립된 채 남게될 것이다. 미국 각지의 가정 폭력 활동가, 가족법 및 이민법 변호사, 여성의 권리 운동가들의 네트워크와 연합은 분출하는 문제에 대해 행동을 같이 하고 매맞는 이주민 여성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개혁 발의를 추구하는데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다. 게다가 이 네트워크들은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뿐 아니라 국제적 차원

에서 매맞는 이주민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이민은 국제적 문제이며 이주민 여성들은 이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활동가들은 다국적, 다차원적이며 매맞는 이주민 여성의 의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인권, 여성의 권리, 이민자의 권리,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전략적 제휴를 건설, 강화해야 한다. 매맞는 여성과 아이들의 법률적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는 데 성공하려면 우리는 이 도전에 맞서 싸워야 한다.

G7: 미국

이주민 여성 노동자의 조직화

미리엄 칭 루이

* 1995년 코펜하겐의 유엔 세계 사회 정상회의에서 열린 경제 정의와 여성의 인권에 관한 청문회에서 전 의류 노동자 차이 펜 린은 아시아 이주민 여자 재봉사들이 하루에 14시간, 일주일에 6~7일을 노예처럼 일한다고 말했다. 중국 광동에서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온 차이 펜은 이주민 여성의 물결을 따라 재봉자의 노동 착취 공장에 도달했는데 거기서는 시간당 1달러밖에 벌지 못했다. 지금 그녀는 낮에는 요양소의 관리인으로 밤에는 '아시아 이주민 여성 후원회'의 위원회 봉사자로 일하고 있다.

*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여성에 관한 4차 유엔 세계 회의 동안에, 여성 노동자들 사이의 원탁 토의에서 텍사스 엘 파소 출신의 카르멘 이바라는 멕시코인 이주민 여성의 경험을 보고했다. 이 이주민 여성들은 임금, 직업에 대해 사기를 당한다고 이바라는 말했다. 한편 미국 국경 수비대는 군사 장벽을 설치하여 가난한 노동자가 입국하는 것을 막았다. 하지만 NAFTA 이후 일자리가 나가는 것은 막지 않았다. 멕시코 치후아후아 출신의 카르멘은 23년간 재봉사로 일했으며 라 무예 오브레라에 도움을 청하러 간 후 자원 봉사자 및 상근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오클랜드에서 코펜하겐까지, 엘 파소에서 베이징까지는 먼 거리이다. 하지만 이 두 이주민 여성은 대양과 국경을 건너 자매 이주민 및 전세계에 조직되고 있는 여성 노동자 단체와 결합했다. 그들의 조직은 활동가들이 "노동의 여성화" 및 "이민의 여성화"라고 이름 붙인, 경제의 세계화에 의해 이끌어지는 경향으로부터 발생했다. 현재의 경제 발전 모델은 시장 경제, 수출 생산, 자유 무역, 민영화, 부자를 위한 면세, 사회 지출 삭감, 저임금 정책에 대한 강조와 함께 점차 여성의 저임 및 무임 노동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무역과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의 촉진과 농업 기반의 공동체 및 환경의 파괴, 폭력, 전쟁, 지역 분쟁은 국경을 넘은 여성의 이주에 박차를 가했다.

유입국에서는 기업들이 저임금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에서 이주민 여성의 착취로 이익을 얻는다. 상류 및 중류 계층의 가정은 이주민 가사 노동자의 노동에서 이익을

얻는다. 그리고 범죄 조직과 많은 남성들은 여성과 소녀들의 성적 매매에서 이익을 얻는다. 송출국에서는 기업, 정부, 노동 계약자, 범죄 조직이 이주민 여성 노동자의 송금, 외환, 허가 수수료, 강제 노동에 의존하여 성장해 왔다.

환경, 인권, 인구, 개발, 사회 문제, 여성에 관한 유엔 회의 동안 이주민 여성 노동자 단체들은 전략과 조직화 방법을 방대하게 교환했다. 다음은 차이 펜과 카르펜의 조직, 아시아 이주민 여성 후원회(AIWA)과 라 무예 오브레라(여성 노동자)에 의해 이용된, 조직화 방법에 대한 미국의 두 가지 예이다.

아시아 이주민 여성 후원회

차이 펜은 AIWA가 자신이 영어도 못하고 하루에 10시간씩 노동 착취 공장에서 노예처럼 일한 후에 지칠대로 지쳐 집에 돌아가서는 애를 돌봐야 하는 신규 이민자로서 느낀 극심한 고독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었다고 말한다. 1983년에 창립된 AIWA는 공동체에 기반을 둔 단체로서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과 인접한 실리콘 밸리의 의류공장, 가전제품 공장, 호텔, 레스토랑, 요양소, 세탁소 등 저임금 산업 부문에서 일하는 이주민 여성들을 조직화한다. AIWA는 지역 여성 노동자 사이에 신뢰, 친목, 리더쉽을 기르기 위해 다른 방법과 계획을 썼다. 현재 AIWA는 교육과 분석, 리더쉽 개발과 기술 증진, 변혁을 위한 집단 행동의, 세 연관된 부분으로 이루어진 조직화 절차를 추구한다.

변혁을 위한 대중 교육

AIWA의 많은 회원들처럼 차이 펜도 “처음에는 영어를 배우고 나 자신을 개발하려 AIWA에 왔습니다. AIWA의 작업장 영어 강좌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어와 미국에서 우리의 권리를 가르칩니다.”라고 말한다. 재봉사의 유일한 휴일인 일요일이나 다른 노동자들이 일을 마치는 날에 열리는 영어 강좌는 여성의 이야기와 경험을 이끌어내고 연결하여 큰 억압의 구조를 인식하게 만들고 그들이 자신의 권리와 꿈을 표현할 수 있도록 북돋워준다. 예를 들어 많은 여성들은 AIWA에 오기 전에 최저 임금에 관한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아무 것도 몰랐다. 이제 그들은 최저 임금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

노동자들이 저녁 강좌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나타내었을 때 교사들은 왜 노동자들이 두려워하는지에 관한 토론을 이끌어냈다.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적 괴롭힘의 문제와 원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행동을 다루었다. 초기 한국인 이주민 여성의 삶에서 마틴 루터 킹의 탄생 기념에 이르

기까지의 교과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이주민은 자신의 경험을 인종주의의 역사, 이전 이주민과 소수 인종이 겪었던 노동 착취, 자신의 투쟁이 어떻게 후손들의 삶을 향상 시킬지와 연관시킬 수 있었다.

1995년 AIWA는 접종하는 반이민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 시민 강좌를 시작했다. 특히 이민을 제한하고 합법 이민자에게까지 연방 기금의 서비스를 폐지한 1996년의 가혹한 이민 및 복지 개혁 입법의 조항들로 인해 강좌의 필요성이 커졌다. 시험의 준비는 미국 역사, 헌법과 권리 조문을 다루어 노동자들이 미국의 팽창주의와 인종주의적 노동 착취를 분석하고 어떤 권리가 보장되거나 누릴 수 있는지를 배운다. 작업장 영어 강좌와 시민 강좌는 새로운 여성들을 가르칠 교사들을 모집하고 훈련시켰다.

리더쉽과 기술 개발

차이 펜과 다른 의류공장, 전자제품 공장, 호텔, 요양소 노동자들은 이제 AIWA의 많은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봉사, 교육, 이벤트, 모금의 네 분야에 관한 계획 위원회에서는 봉사를 수행하고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며 교과 과정을 발전시키고 작업장 영어 강좌를 가르치는 데 참여하며 교육 현장 학습 및 여성과 가족을 위한 이벤트를 조직하고 리더쉽 개발 훈련 일정을 운영하며 보조금 신청서를 쓰도록 돕고 AIWA의 활동을 위한 기부금을 모금한다. 또한 운영위원회는 AIWA를 찾아오는 노동자들이 상사와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준다. 여성들은 노동자의 소식지를 중국어와 한국어로 써서 배포하기 시작했다.

책임을 위한 집단 행동

대중 교육, 참정권 운동, 리더쉽 개발 및 기술 증진은 노동자들이 억압적인 산업, 사회, 가족 구조에 대항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함께 이루어진다. AIWA는 노동자들이 사회적 변혁을 위해 조직하고 행동하는 것을 북돋운다. 이 활동들은 의류공장 내에서 반이민 법안에 대한 청원을 들리는 일에서부터 노동자와 환자를 학대하는 요양소에 편지를 쓰고 전자제품 공장이 응급 처치 용품과 환기를 제공하고 반복되는 스트레스로 인한 부상을 줄이기 위해 작업 공정을 변화시키며 의료 비용을 지출하도록 하는 데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AIWA는 의류 노동자 조직 계획과 전자제품 조립공을 위한 작업환경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계획을 운영한다.

의류 노동자 정의 캠페인을 조직한지 3년 반이 지난 후 노동자들은 회사의 대답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의류 제조업자인 제시카 맥클린특이 계약자와 사업 관계를 끝낸 후에, 자신들이 일하던 공장이 문을 닫자 12명의 여성들에게는 부도 수표만 남았다. 1996년 3월 맥클린특과 AIWA는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 자금, 의류 노동자와 자녀들을 위한 학자금, 맥클린특과 계약한 가게에서 일어나는 권리 침해를 알릴 2개 국어 전용 전화 설치 등에 합의했다. 또한 노동자들은 알려지지 않은 금액의 현금을 받았다. 양측은 의류 산업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동의했다. 이번 캠페인 과정을 통해 여성들은 심각한 공장의 인권침해에 대한 제조업자와 소매상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들은 권리를 주장하고 협박, 블랙 리스트에 올리기, 표현의 자유 부정을 극복한 이주민 여성 노동자의 모델이 되었다. 또한 노동자들과 AIWA는 미국 전역의 도시에 광범위한 캠페인 지원 위원회를 신설하여 장래 조직화의 지원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 현재 AIWA는 다른 제조업자들에게도, 옳은 일을 하고 비슷한 계약에 서명함으로써 협력적인 책임감을 보이라고 요구한다.

AIWA는 조직화의 세 가지 요소를 보다 긴밀하게 연관시키려고 하고 있다. 차이 펜은 “한 세기 이상 만들어져 온 문제를 변화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너무 늦기 전에 나서서 주장을 하자. 우리는 기업들이 자신들을 부자로 만들어 준 노동자들에 대해 책임과 동정을 보이기를 원한다. 노동자들이 기업에 직접 고용되어 있든 부계약자에 의해 간접적으로 고용되어 있든 말이다. 우리는 무역 거래에서 노동자와 환경을 보호하기 원한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삶과 환경을 희생해선 안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와 정치가들이 아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을 그만두기 원한다.”라고 말했다.

라 무예 오브레라

노동자 조직가인 카르멘 이바라는 라 무예 오브레라가 성대한 15주년 기념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1981년에 설립된 라 무예 오브레라/센트로 델 오브레로 프론타리조는 텍사스 엘 파소에 있는 노동 계층 멕시코 이주 공동체에 기반을 둔 독립적인 노동자 기구이다. 카르멘은 엘 파소 주민의 70% 이상이 멕시코계라고 설명했다. 많은 사람들은 영어를 할 줄 모르며 멕시코에서 학교를 끝마치지 못했는데 이는 그들이 어릴 적부터 일을 시작해야 했으며 직업과 가족 부양 때문에 미국에서는 학교에 다닐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엘 파소의 경제는 제조업, 거대 군사 정보 센터와 기지, 서비스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들은 멕시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사실 1848년 강제로 합병되기 전까지 텍사스는 멕시코의 영토였다. 카르멘은 1993년 나프

타 조약 아래로 상황은 악화되었으며 자신들은 노동자들이 나프타 하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도록 설명과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 무예 오브레라는 그에 따라 활동을 재조직했다. 카르멘은 “우리는 가장 큰 고용부문인 의류 산업의 노동자 조직화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의류 노동자와 경제 위기가 다른 산업으로 옮겨가자 우리 또한 그들과 함께 이동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직업, 교육, 건강, 영양, 주택, 평화, 민주, 정의에 관한 권리를 위해 싸우며 포괄적인 교육, 공동체 조직화, 개발 전략으로 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라 에스쿨라 포풀라

고용된 의류 노동자와 실업 상태의 의류 노동자를 위한 식량 은행은 라 무예 오브레라가 노동자의 기본적인 요구 조건과 조직화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시작한 사업 중 하나이다. 전 의류 노동자가 수행하는 교육 워크샵에서 노동자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권리에 대해 배운다. 워크샵 이후에 여성들은 식량 은행에 가서 빵을 무료로 얻고 토틸라와 우유를 매우싼 가격에 산다. 라 무예 오브레라는 더 이상 식량 은행을 운영하지 않지만 라 에스쿨라 포풀라는 계속하면서 노동자들이 영어와 시민권을 공부하면서 자신의 기본권, 노동권, 인권에 대해 서로 배우고 가르치도록 한다.

책임을 위한 공동체 조직

라 무예 오브레라는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여성 의류 노동자들이 20만 달러를 배상받도록 도왔다. 대규모 제조업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의류 공장은 잠시 가동하지만 일이 끝나면 곧 문을 닫은 후 다른 계약 하에 다른 이름을 내걸고 다시 문을 열어서는 노동자를 임금도 주지 않고 해고한다. 수천 명의 의류 노동자가 밀린 임금을 받지 못했다. 라 무예 오브레라는 지방, 주, 연방 관리들이 책임을 지도록 압력을 가하고 노동자들을 조직하여 의류 공장의 학대에 관한 대배심 조사에서 증언을 하도록 했다. 다이아나 패션의 노동자들이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소유주가 공장 문을 닫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려 했을 때 라 무예 오브레라가 조직화한 재봉사들은 경찰에 끌려갈 때까지 쇠사슬로 자신과 재봉틀을 묶었다. 여성들은 단식투쟁을 했다. 노동자들은 아직도 84,000달러를 받지 못했지만 여론을 환기시키고 임금 체불에 대해 구속을 포함한 형사 처벌을 규정한 주법률이 제정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라 무예 오브레라는 작업장의 위반사례를 더 열심히 조사했으며 시행 기구를 통해 이주 노동자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했다. 또한 이주 노동자 조직화를 법적으로 지원할 텍사스 지역 법률 자문의 의료 산업 계획을 시작하도록 도왔고 시에서 367,000달러를

투자하여 턱아와 저임금 여성 노동자를 위한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나프타에 대처하며

라 무예는 점차 나프타에 의한, 노동자의 일자리와 권리 상실을 멈추는 데 주의를 기울였다. 수십 개의 공장이 문을 닫았고 소매, 의류, 전자, 서비스 산업에서 수천 개의 일자기가 저임금을 찾아, 규제를 피해 사라졌다. 도망친 기업 중에 몇몇은 엘 파소에 30년 동안 있었지만 국경을 넘어 도망치는 대부분은 존슨 앤 존슨, 알코아-후지쿠라, 세이멘, 하스브로, 스위프트-에크리히 같은, 상대적으로 엘 파소에 온 지 얼마 안되는 초국적 기업들이다.

라 무예 오브레라는 이 회사들 거의 전부가 엘 파소에 있는 동안 멕시코에서 설비를 발전시켰으며 멕시코와 라틴 아메리카에서 사업을 벌이는 데 도약대로 이용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게다가 엘 파소에서 3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거의 40개의 제조 회사들이 멕시코에도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라 무예 오브레라는 6천 개의 일자리가 또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대부분의 해고 노동자들은 스페인어를 말하는 멕시코인들과 치카노스라 불리는 미국 태생의 멕시코계인데 이들은 최저 임금을 받고 있었으며 이제 침체된 직업 시장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다.

라 무예 오브레라는 나프타 협정이 강도 높은 국경 통제와 반이민 정책 강화로 보강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엘 파소는 미국에서 가장 불비는 임국 장소 중 하나이다. 엘 파소는 또한 두 개의 주요 국경 수비대가 국경을 봉쇄하기 시작하는 지역이다. 작전 방어 지역에서는 국경 수비대가 하루 24시간 거의 20마일을 국경을 따라 순찰 하며 국경을 다라서는 1.3마일 길이에 10피트의 높은 벽이 가로막고 있다. 빈곤한 멕시코인들과 치카노 노동자들이 이민 지위에 관계 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심문을 받으며 서류와 재산을 불법적으로 압류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라 무예 오브레라는 노동자들을 조직하여 국경 수비대의 행동에 항의하고 두 주의 입법 기구에서 나프타의 영향에 관해 증언하도록 했다. 대표자들은 미 노동부의 관리를 만났으며 지역적, 전국적으로 전단과 소식지를 만들어 배포했다. 엘 파소에 있는 텍사스 대학의 사회학과와 합동으로 라 무예 오브레라의 노동자들은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의 삶과 노동 환경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여성에 대한 착취, 노동법의 강화의 필요성, 재훈련 계획의 개발, 산업을 부유하게 하는 데 자신의 삶을 바친 여성들에 대한 지원 등의 결론을 내렸다.

라 무예 오브레라는 국경 지역의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2500만 달러의 직업 안

정 기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 돈은 노동자들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발견하고 만들어 내는 것을 도울 것이다. 이 계획은 저임금의 멕시코/치카노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 적절한 지원 및 훈련 계획을 확립하기 위한 긴급 팀을 활성화시키고 “원스톱”을 지향하는 2개 국어 직업 훈련 센터 및 해고 노동자와 해고를 눈앞에 둔 노동자들을 위한 서비스 및 훈련 센터를 설치하며 멕시코/치카노 노동자들이 문화를 유지하면서 장기간의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가족에 기반을 둔 문화 상점을 개발할 것이다. 또한 라 무예 오브레라는 대체 직업과 적절한 훈련이 수립될 때까지는 제조 회사들이 쉽게 떠날 수 있게 하는 나프타 규정의 연기를 요구했다. 엘 파소와 미국-멕시코 국경의 저임금 치카노/멕시코 노동자에 대한 인종 차별과 기본권 침해에 관해 미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했다. 그리고 라 무예 오브레라의 창립자 중 한 사람인 세실리아 로드리게즈는 나프타와, 국경에 관한 비슷한 정책들에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난한 공동체인 자파티스타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화를 하는 멕시코 전국 민주 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라 무예 오브레라와 AIWA는 차이니즈 스태프와 노동자 연합, 한국 아주 노동자 후원회, 센트로 데 트라파자도레스 라티노스 등의 자매 조직과 함께 연합하여 노동 조합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많은 아주 노동자와 소수 인종 노동자들을 위해 전국적으로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전국 노동자 센터 연합을 결성했다. 라 무예 오브레라와 AIWA의 여성 노동자들은 교회 네트워크와 진보적 기금의 후원으로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조직된 노동자 교회에 참여했다.

카르멘은 “우리가 베이징에 간 해에는 아주 노동자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멕시코로 돌아가기를 바랬지만 거기서도 민중을 심하게 억압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노동자에게 이익이 될 변화를 이루고 싶습니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족을 부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승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투쟁할 것입니다.”라고 결론지었다.

국제적 여성 인신매매 : 주제와 전략

린-랩 추

지난 3년 간 인권(비엔나), 인구(카이로), 여성(베이징)에 관한 큰 유엔 국제 회의와 관련된 활동과 병행하여 NGO들은 여성 인권을 침해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써 인신매매를 의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이는 모든 최종 성명과 활동 계획에 인신매매가 특별히 언급된 점에서 성공적이었다. 예를 들어 1993년 6월 세계 인권 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 성명과 활동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문화적 편견과 국제적 인신매매를 포함한, 성폭력, 모든 형태의 성적 괴롭힘, 착취는 인간의 존엄 및 가치와 양립할 수 없으며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이는 경제, 사회 발전, 교육, 모성 보호, 보건, 사회 보장 등의 분야에서 법적인 수단과 국가적 활동 그리고 국제적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인권 의제에 여성 인신매매를 포함한 성폭력이 들어간 것은 정치적인 승리이다. 이는 여성을 종속적인 위치에 놓는 것이 정치적으로 정당화된 현실이며 가부장제적인 이익, 이데올로기, 기구들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에 소멸될 수 있다는 인식을 의미한다. 전략적으로 국민 국가에 현재 성폭력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의 책임을 지울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다루는 대부분의 현존하는 국가적, 국제적 법률과 관료적 수단은 매춘을 위한 인신매매만을 취급하고 그것도 국경을 건너는 이동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세계 곳곳에서, 물질적, 신체적, 심리적, 성적 착취에 취약한 수백만의 이주민 여성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에 의지할 수 없다.

국제적 전략과 국제적 네트워크

여성 인신매매에 반대하는 재단(STV)은 여성 인신매매에 반대하는 국제 연합(GAATW)의 창립 멤버이며 1994년 8월 타이 치앙마이에서 시작되었다. 22개국 40개

단체를 대표하는 75명의 여성 활동가, 사회 운동가, 학자, 정책 수립가, 법조인, 공무원들은 서/북반구 국가들과 남반구에서 여성 인신매매의 사례를 나열했다. 한 사람은 인신매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신매매 루트는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서로 교차되고 “소비자”的 요구는 더욱 잔인하고 비열해지는 한편 인신매매 네트워크는 더욱 조직화되고 폭력적으로 되어 간다는 데 대해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워크샵에서는 정부가 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다음을 통해서이다.

-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할 엄격한 법률 및 감시 없이 “이주 노동 수출”을 장려함
- 각국에서 특히 여성 이주민의 권리와 보호를 보장하는 것을 계율리하여 “제3자”와 중개인들에게 그들이 의존하도록 만듦
- 억압적인 이민 및 이주 노동 법률을 유지하여 공적으로 규제받는 부문에서 이주민 여성의 일할 기회를 부정함

국제 연합의 회원 기구들은 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고 위기 센터를 운영하며, 예방 계획으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고 이주민 여성 노동자의 권리와 더 나은 법률 및 정책을 위한 후원활동을 수행한다. 문제의 초국적 성격 때문에 국제 연합의 선결 과제 중 하나는 필요하고 가능한 부분에서 정보와 실용적 경험을 교류하고 협력하는 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여성 인신매매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협약

국제적 협약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1949년 인신매매, 착취, 매춘 억제에 관한 협약이다. 이것은 명시적으로 인신매매를 다루는 유일한 협약으로서는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협약이 다른 문제들은 줄어들기는커녕 오늘날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협약은 인신매매를 정의하지 않고 매매를 매춘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 상황을 다루는 데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

현존하는 다양한 국제법적 인권 협약들은 참조점을 제공하며 더 깊이 고찰되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개선 및 강화되어야 한다. 가장 연관성이 많은 것은 여성 차별 철폐 협약(CEDAW)의 6항과 19항, 기본권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주 노동자의 권리, 강제 노동, 결사의 자유에 관한, 관련된 국제 노동 기구(ILO) 협약이다.

이들 국제 협약들 대부분의 문제점은 폭력에 관한 개인적, 집단적 항의를 접수할 능

력과 강력한 감시 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위에선 언급한 협약들을 검토, 개선하고 현 상황에 실용적인 적용을 하기 위한 일들이 이루어졌지만 1949년 협약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최근 유엔 협약 차원에서 긍정적인 두 가지 발전은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에 관한 성명을 1994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것과 194년 4월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특별 조사관을 임명한 것이다. 그의 임무에는 강제 매춘과 인신매매에 관한 조사가 포함된다.

문제의 정의

보고서를 위한 연구 과정에서 여성 인신매매 문제에 대처하는 데 기본적인 문제는 정확하고 분명한 정의가 없다는 것임이 분명해졌다. 인신매매의 전통적인 개념은 단지 매춘에 관한 것이고 주로 '매춘 알선'의 측면을 다루어 '순진한' 처녀들이 사창가에 유혹되는 것을 보호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대개 사창가 내의 학대와 노예적 상황을 무시하고 있다. 게다가 전통적인 개념은 상업적 결혼 기관과 가사 노동자 매매와 같은 현대적 형태의 매매를 다루지 않고 있다. 최근의 국제 문건 또한 여성 인신매매에 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몇몇은 매우 모호한데 예를 들어 인신매매를 불법 이민, 밀입국과 연관시키던지 인신매매를 매춘과 동일시한다. 여성 인신매매에 관한 1949년 유엔 협정 조차도 '여성 인신매매'와 '강제 매춘'의 두 중요한 용어를 정의하지 못했다.

다음의 실용적 정의는 국제 연합이 공적, 사적 부문에서 일어나는 착취적 노동 및 생활 조건, 폭력적 중개 관습을 다루기 위해 발전시킨 것이다.

□ "여성 인신매매": 폭력, 폭력의 위협, 권위나 지배적 위치의 남용, 채무, 사기 기타 강제적 형태를 통하여 국내에서와 국가 간에 노동과 서비스를 위해 여성을 모집하고 이동시키는 모든 행위

□ "강제 노동과 노예적 관습": 여성에게서 노동 혹은 서비스의 착취, 또는 폭력, 폭력의 위협, 권위나 지배적 위치의 남용, 채무, 사기 기타 강제적 형태를 통하여 여성의 법적 자아와 신체를 전유하는 행위

국제 연합은 이 정의를 공식화하면서 두 개의 국제 협정을 참조했다. 이들은 1926년 국제 연맹 노예 협약과 채무, 강제 결혼 등 모든 노예적 관습을 비난하고 있는 1956

년 보조 협약, 국제 노동 기구 협약 295번이다. 이 협약들은 국제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현 상황을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두 정의에서 중요한 요소는 "강제"란 단어인데 여러 가지 형태를 띠며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이동, 행동의 자유 박탈, 노동 조건과 작업 성격에 관한 사기, 권리 혹은 지배적 위치의 남용. 이것은 개인 서류를 압수하는 것에서부터, 지배적인 사회적 지위를 남용하고 자연적인 가부장적 지위를 남용하며 법적 지위가 없는 개인의 취약한 위치를 남용하여 개인을 종속적 위치에 두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또한 "노동 혹은 서비스"는 위에서 언급한 강제적 조건 하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사 노동, 성적, 재생산적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들 서비스가 노동으로 인정되든 노동 계약에 의해 일어나든 결혼 계약에 의해 발생하든 상관이 없다. 또한 "여성의 법적 자아와 신체의 전유"는 노예 협약에서 사용된 부분 혹은 전체적인 소유의 개념이지만 "전유"라는 단어는 개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행위, 마치 개인을 소유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데 쓰인다. "법적 자아의 전유"는 신분증의 압수나 결혼 계약에서 법적 신분을 상실하도록 여성에게 위조 신분을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두 정의에 내포된 기본적인 원칙은 자신의 생활과 신체를 통제할 수 있는 모든 여성의 인권이다. 이는 자신의 생활과 신체에 관해 개인적인 선택을 내려 매춘에 종사하는 성인 여성의 권리로 포함한다.

현재의 전략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신매매", "강제 노동", "노예"는 범죄로 취급되고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국제적으로 여성 인신매매는 여성 인권의 침해로 인정된다. 사회적 문제와 활동 영역의 수많은 조직과 네트워크들은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고 있으며 90년대 들어 이주민 여성의 권리에 관한 수많은 후원회들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성장하고 있다.

게다가 여성 인권 침해의 이런 형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대한 "위험"은 국가가 이 상황에 대해 무언가를 하려고 결정할 때 억압적 수단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입국 정부는 보다 억압적인 이민법을 제정하고 이주민 여성들이 매춘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장 결혼"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권을 가진 남성과 외국인 여성 사이의 결혼을 규제하는 엄격한 조건을 부과한다. 반면에 송출국 정부는 매춘을 위해 이민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젊은 여성들에게 보다 엄격한 통제를 가

하고 가사 노동 등 보호받지 못하는(규제되지 않는) 부문에서 학대에 관한 보고가 있을 때 여성들이 해외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한다.

국가의 접근 방식을 분석해 볼 때 결혼, 가사 노동, 매춘을 위한, 하지만 명백하게는 매춘을 위한 인신매매의 여성 회생자들은 “비도덕적 수입”을 위해 “비도덕적 행위”를 저지르는 “비도덕적 인간”, “범죄자”, “불법 이민자”, “공공의 부랑자”, “불법 노동자”, “비도덕적”이지만 자유로운 계약에 의한 노동에 의해 “법규를 위반한” 사람으로 분류된다.

국제 협약은 종교적 용어인 “부도덕”, 경제적 용어인 “이윤”을 사용하고, 여성의 의지를 무시함으로써, 즉 매춘을 “동의 하의 혹은 동의 없이 이루어진” 범죄로 봄으로써 여성에 대한 이런 분류를 강화한다. 사실 정부가 주목하는 문제는 여성에 대해 저질러지는 행위가 아니라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 그리고/혹은 여성의 이주와 취업을 용이하게 하는 제3자, 즉 여성의 주요하고 유일한 취업 기회를 구성하는 여성적 부문에 의해 저질러지는 행위이다. 결과적으로 여성과 여성의 노동은 국가의 통제와 징계의 대상이 된다.

이것은 법률이 공식적으로 제3자를 범죄자로 규정하고 규제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증거를 통해 분명히 드러나는 사실은 체포, 벌금 부과, 감금, 추방, 기타 처벌이 차취자 혹은 위반자 보다는 여성 노동자/이주민에게 부과된다는 것이다. 인신매매의 회생자들을 다소 염려해 주는 유일한 국가는 (조직) 범죄에 대해 여성을 중인으로 사용하는 국가이다. 특히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매매꾼을 고소하는 경우 여성들이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허가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재판이 끝나면 여성들은 보복에 대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추방되는 것이 보통이다.

여성의 조직된 노력은 국가 정책의 여성에 대한 해로운 영향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최근 국제적 기구들은 국가 정책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대안으로 이들 기구들은 인신매매와 강제 노동/노예적 관습에 대한 대안적 전략을 제안하거나 수행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때로 여성의 억압적인 국가 관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이고 절대적으로 여성을 위한 주된, 아마도 유일한, 전략은 비정부기구적이었다. 세계의 NGO들은 여성의 실제적인 필요, 정당한 권리, 학대에 대한 일상적 투쟁, 정의를 위한 정치적 투쟁에 초점을 맞춘다. 그들의 활동은 다음의 세 주요 부문에서 발전되었다.

1. 상담, 안전한 피난처, 의료 및 심리적 관심, 법적 도움을 포함한, 여성을 위한 지원 서비스 조직

2. 자신의 신체를 통제하고 이동의 자유를 누리며 정당한 보수를 받고 일하고 노동 조합을 조직하고 참여하며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아내, 하녀, 매춘 여성의 위치에 상관없이 위반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인신매매와 강제 노동/노예적 관습의 인식을 촉구하기 위해 정부와 기구에 로비하는 일

3. 장기간의 후원 사업은 주로 아주 노동자와 엔터테인먼트 부문, 특히 매춘에 종사하는 여성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몇몇 NGO들은 서로 협력하여,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선택한 여성들을 위한 귀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정부는 관련된 여성의 회망과 상관 없이 이 방법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들은 잘 감시, 평가되어 여성의 자기 결정이 존중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NGO들은 강제적 중개 및 노동 조건의 기본적 원인은 세계적 차원에서 부의 불균등과 식민지적, 인종주의적 권리 관계의 성차별적 형성이라고 규정한다. 그들은 이주가 빈곤 및 전통적인 성적 억압과 제한을 탈피하기 위한 여성의 전략이라고 인정한다.

매매된 여성의 후원회들은 관련 여성의 주장을 법률화시킬 필요성을 깨달았다. 이로 인해 NGO들은 가사 노동자, 매춘 여성, 아내들 사이의 자발적인 조직화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폭력, 사기, 강제, 채무, 기타 성적으로 중립적인 기준에 의해 정의된 학대에 대항하여 전략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 이 여성들을 전임 파트너로 일하도록 초청한다.

G-7 국가에서 지배적인 문화의 여성들은 물질적 또는 다른 측면에서 가사 노동자, 매춘 여성, 이주민 부인의 자발적인 조직화와 주장을 돋고 식민지적, 성차별적, 인종 주의적 권리 관계를 유지하는 세력에 대한 인식과 투쟁을 증진함으로써 이 노력에 연대를 표시할 수 있다.

여성 인신매매는 후아이로의 NGO 포럼의 중심 주제 중 하나였으며 많은 NGO들과 국제 기구들에 의해 다루어졌다. 행동 강령은 만약 정부가 국가적 수단을 계획함에 있어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권리 옹호적 접근의 전망을 보여줄, 여성 인신매매에 관

한 구절들을 포함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 부분의 230절이다.
“국제적 협력을 통해 조직된 혹은 다른 형태로 성적 착취, 포르노, 매춘, 섹스 관광을 위해 여성, 소녀를 인신매매하는 것에 대항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관련된 인권 협약의 실행을 강화하고 법적 사회적 서비스를 피해자에게 제공한다. 이것은 조직화된 여성 착취의 책임자를 기소하고 처벌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한다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전략적 목표의 131절도 중요하다.
“직업 훈련, 법적 도움, 비밀리의 의료를 통해 인신매매의 피해자를 치료하고 사회로 돌려보내기 위해 계획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할당하고 인신매매의 피해자들에게 사회적, 의료적, 심리적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비정부기구와 협력하기 위한 수단을 취한다.”

이 구절의 긍정적 요소들은 국가가 인권 협약을 이용하도록 요구하는 점이다. 이것 은 이 원칙에 기반한 수단들이 관련 여성의 권리를 보다 존중할 것을 보장한다. "... 을 포함하여"라는 구절을 사용함으로써 섹스 산업 이외에 다른 형태의 여성 인신매 매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타국 정부와 NGO와의 국제적 협력을 요 구하는 것은 예방과 후원 사업을 위해 꾀壑적이다. 재원 할당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직업 훈련을 포함한...포괄적인 프로그램"은 인신매매의 회생자를 위한 대안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진정한 가능성을 보여 준다.

2. Global Alliance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GAATW)의 소개와 목적

GAATW는 1994년 10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여성 재단(Foundation for Women)에 의해 개최된 여성의 해외 이주와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 회의에서 만들어졌다. 이 회의의 참석자들은 국제화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로 증가되고 있는 여성의 인신매매의 근절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우리의 목적은 여성의 해외 이주를 막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인권이 정부 당국과 관련 기관에 의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여성들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시키고, 우리의 활동이 근본적인 문제점을 다룰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근대적인 형태의 노예제도를 근절시키기 위한 모든 활동에 여성 대중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현재 GAATW에는 100명 이상의 개인 혹은 단체 회원이 있다. 활동 회원들의 모임은 방콕의 국제 협력 사무소를 위한 활동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 졌다. 또한 GAATW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가 모임도 구성되어 있다.

우리의 목적은

- 각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 기존의 국제 기구와 연대해 나간다.
 - 당면한 문제들을 알려내기 위해 기존의 국제 기구를 활용하고 강화한다.
 - 새로운 국제 기구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 여성 인신매매에 관한 연구와 활동을 강화한다.

최근의 활동

메콩 지역의 여성 인식개선에 관한 연구와 활동 프로젝트

1997년 11월 캄보디아의 시엠 리프에서는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에서 참석한 연구 팀 대표자들이 그들의 연구 결과의 토의와 연구 보고서 작성을 위한 모임을 가졌다.

현재 연구 보고서는 각 팀에 의해 완성되어가고 있다. 또한 GAATW는 태국에서의 여성 인신매매의 최근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에서의 연구 결과는 종합되어 메콩 지역의 여성 인신매매에 관한 비교 보고서로 작성되어질 것이다. 이 보고서는 올해 5월과 6월에 열릴 계획인 지역 정책 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역 사회와 여성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사안들과 활동들을 논의할 연구팀에 대한 사전 작업을 포함하는 두 번째 단계의 준비작업도 현재 진행중이다.

동남아에서의 국내 연수

동남아 8개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한 여성과 아동들에 대한 행정 지원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일련의 연수 모임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 모임에는 여성 조직자, 행정 담당자, 아주 노동자 단체들이 참가할 계획이며, 행정 담당자와 관련 단체간의 연대와 실천 가능한 조치들에 대해 토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11월 성(Gender) 문제에 관한 요기아카르타 공동 사무국에 의해 실현적인 교육이 진행되었는데, 이 3일간의 연수에 25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함께 하였다. 이 실현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경험은 GAATW가 행정 담당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캄보디아에서의 이 교육은 4월말에 처음 열릴 예정이다.

지역 교육

자료 센터

자료 센터는 점점 성장하고 확장되고 있다. 격년으로 발행되는 회보외에도 GAATW bulletin이라는 소식지가 매달 발간될 예정이다. 또한 자료 센터는 인신매매된 여성의 소송을 후원하고 재판 과정에 있는 여성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현재 몇 개의 자료 센터를 추가로 준비하고 있으며, 여러 회원들이 GAATW의 자료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작업도 진행중이다. 자료 센터에서는 이메일과 인터넷을 통하여 GAATW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한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회원들과 도움이 될 만한 이들의 이메일 주소를 많이 확보하지 못하였다. 빠른 시일내에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길 바라며, 상호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확장된 GAATW 홈페이지에 방문하기를 바란다.

인신매매, 강제노동, 노예제와 유사한 관습의 피해자를 위한 기본 규정의 제정

피해 여성을 위해 여러 가지 사안을 처리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단체들은, 여성

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의 즉결 추방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 규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GAATW는 올해 이 기본 규정의 제정 작업을着手할 예정이다.

새로운 소식

프놈펜, 2월 25일 (로이터) —

13세의 '소파'는 캄보디아 여성의 가장 불행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비극적으로 살아왔다. 소파가 10살이 되던 해, 그녀는 양아버지로부터 강간을 당했다. 12살이 되자 그녀의 양아버지는 소파를 나이트클럽에서 매춘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13세가 될 때까지 그녀는 수백명의 남성들에게 매춘을 해야만 했다.

한 '손님'이 그녀의 삶을 바꾸어 놓기 전까지 이러한 삶은 끔찍한 악몽과 다름없었다. 그 손님은 경찰과 접촉하며 비밀리에 지원 활동하고 있었으며, 그녀를 그곳에서 구해냈다. 그리고 그녀는 위험에 빠진 여성들을 위한 활동을 하는 AFESIP이라는 기관에서 보호되었다.

지금 소파는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상담을 받고 바느질과 요리를 배우며 AFESIP센터에서 14명의 다른 소녀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 최근에 소파는 "내 삶은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곳에서 머물면서 공부한다는 것이 행복합니다"라고 말하였다. AFESIP와 같은 지역 단체들은, 소파와 같은 소녀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힘든 투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단체들은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다고 말하고 있다.

사회 사업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캄보디아에는 약 20,000명 가량의 매춘 여성이 있다. 그리고 그들 중 약 3분의 1은 미성년자이며 매춘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한다. 사회사업가들의 말에 따르면, 많은 캄보디아 남성들이 매춘지역에 자주 가는 것이 매춘을 더욱 조장하며, 어린 소녀와 비자발적인 여성들에 대한 착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한다.

매춘의 강요

프놈펜 경찰서의 법무부서 책임자인 이에드 라자크의 말에 따르면, 때때로 어린 소녀들은 공장이나 식당에서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약속에 속아 매춘을 하게 된다고 한다.

어떤 소녀들은 가난하고 해체된 가정의 식구들에 의해 매매되기도 한다. AFESIP의 조사 담당자인 사오 초에우르드는 “가난과 물질만능주의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딸을 판다. 그들은 TV와 좋은 옷을 갖고 싶어 한다.”라고 말하였다.

프놈펜의 매춘지역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북서지방 출신의 14세의 매춘여성 ‘나이’는, 그녀의 어머니가 3년전 빚을 갚기 위해 그녀를 \$400를 받고 아는 사람에게 팔았다고 한다. 그녀가 프놈펜의 매춘 지역으로 팔려온 것은 11살때의 일이다.

다음 손님을 기다리며 그녀는 “나는 속임을 당했고, 이제 내 삶은 이곳에서 끝날겁니다. 네가 만약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 어머니는 나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할겁니다.”라고 씁쓸히 말했다.

나이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3번이나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으나 39세 남성인 포주는 매번 그녀를 다시 데려올 수 있었다고 한다. “경찰이 저를 체포하였을 때, 저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갈 수 없었어요. 경찰들은 단지 우리에게 돈을 뜯어갈 뿐이었어요”라고 그녀는 말하였다.

포주들이 경찰들에게 흔히 뇌물을 주곤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경찰 관계자는 그런 심각한 부정부패를 부인하고 작년 한해동안 400명의 매춘여성을 거리에서 내쫓았다는 사실만을 강조한다.

이에드 라자크는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우리 정책의 일부입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최근에 몇 개의 매춘지역이 폐쇄되었다고 말한다.

인생의 두 번째 기회

매춘생활에서 어렵게 탈출한 여성들과 소녀들을 위하여, AFESIP의 사무실은 수도의 주요 홍등가에서 가까운 서부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여성 실무자들은 구조된 젊은 여성들에게 요리와 바느질을 가르치고, 조사 담당자들은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과 소녀들을 찾기 위해 매춘 지역으로 나간다. UNICEF와 네덜란드 자선기관인 SKN의 도움으로 설립된 센터에서, 문맹인 대부분의 전직 매춘 여성들은 읽기와 쓰기 그리고 수학을 배운다. 일을 하기에는 너무 어린 소파와 같은 소녀는 근처의 학교에 다니고 있다. AFESIP의 대표인 멘 세드다로아드의 말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60명의 매춘여성들을 받아

들였으며, 그중 약 3분의 1은 6개월의 교육을 마친 후 가정부나 재단사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이 곳을 찾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성병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떤 질병은 치료되지 못한다고 한다. 에이즈 검사를 받기를 동의한 8명의 여성 중 4명은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멘 세드다로아드는 말했다.

많은 여성들이 악몽과 감정적이 폭발을 겪고 있다. 몇몇 소녀들은 신문에서 그들의 손님이었던 유명인물을 보고 매우 홍분하기도 한다.

사오 초에우르드는 “우리는 남자를 센터내에 들어오게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조심합니다. 소녀들이 불안해할 수도 있으니까요”라고 말하였다.

인신매매를 하는 조직범죄단이 매춘을 위해 아시아 여성을 시드니, 멜버른, 브리스번 등으로 밀입국시키고 있다. 이 조직에는 여권과 서류 위조자, 재정 담당자, 부패한 이민국 관리, 그리고 매춘업소 주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인신매매를 통해 1주일에 약 10,000호주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반면에 여성들은 짚주리고, 감금당한 채 아무런 보호도 없이 매춘을 강요당하고 있다. 또한 그녀들은 40,000에서 50,000호주달러 가량의 빚을 지고 있다. 작년 7월 이후 67명의 불법적인 매춘을 해오고 있던 여성들이 추방당했다.

(빌체 : Charles Miranda “\$1m trade in sex slave” 1998년 2월 23일

ASIAN MIGRATION NEWS)

인신매매범들에 의한 뉴욕에서의 멕시코 청각장애인들의 노예생활

뉴욕에서 62명의 멕시코 장애인 - 청각과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 들이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채 비인간적이고 장시간의 작업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장애인들은 몇 명의 장애인 식구들이 있는 그들의 가족에 의해 모집되어져, ‘코요테’라고 불리우는 전문적인 해외 인신매매범에 의해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뉴욕에서 그들은, 하루 18시간동안 지하철역에서 펜이나 열쇠고리와 같은 쌔구려 물건들을 팔아야만 했다. 악독한 고용주들은 그들에게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돌아오지 말라고 강요했다. 이 노동자들은 한 달에 약 \$400의 임금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나, 이중 \$200는 지급되지 않았으며, 나머지로 그들은 생활을 해나가야 했다. 이들은 두 채의 좁은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했으며, 협박과 폭력 심지어는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이 그들에게 남겨 준 것은 서로간의 시비와 술로 지새는 나날들뿐이었다.

이번 경우는 피해자중 4명이 뉴욕경찰에 이 사건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해와서 비로소 공개되었다. 이전에도 경찰에 알리려고 하는 몇 번의 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무위로 끝나고 말았었다. 또한 이웃들에게도 이 문제를 분명히 알렸으나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한다.

멕시코 시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학교 대표인 조세 바딜로의 말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해자들중 여럿명이 전에 이 학교의 학생이었다고 한다. 멕시코의 젊은 청각 장애인들은 미국의 의심스러운 직업에 대한 모집에 있어서 쉬운 목표가 되곤 한다. 인구 증가로 인한 실업이 주요한 사회문제인 멕시코에서, 청각장애인은 직업을 가질 기회가 부족하다. 바딜로씨는 미국내에서 이러한 경우가 몇건 발견되었는데 이번 사건은 그중에서도 최악이었다고 말하였다.

이 사건은 미국 언론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미 연방 이민국이 이 사건 이후 알게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조사할 전담부서를 만들 것이라는 발표를 하였다. 그 후 멕시코인들에 대한 밀입국과 인신매매를 해오던 조직중 7명이 체포되었다.

(발췌 : IOM, Trafficking in Migrants, 16호, 1997년 9월)

여성 인신매매와 관련된 조직 발견

스페인 당국의 작년 6월 21일 발표에 따르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매춘을 위한 여성 인신매매와 관련된 조직을 적발했다고 한다. 작년 4월 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수사를 진행한 결과 55명의 여성과 인신매매 조직으로 추정되는 11명의 일당을 체포하게 되었다. 체포된 사람중에는 스페인 과레나 지방의 경찰 책임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브라질, 콜롬비아와 같은 유럽이외의 국가 출신들이었으며, 도미니카 공화국, 모로코, 기니아, 페루, 알제리, 체코 출신들도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들은 자신들이 어떤 종류의 일을 하게될지 알고 있었으나,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게 되리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여성들의 임금은 갱들에 의해 압수되었는데, 그 갱들은 비행기 티켓 값에 대한 상환과 스페인 여행을 위해서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3.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UN 제출 조사보고서

Marjan Wijers & Lin Chew

(커넥션스 No. 5 1997 네델란드)

1. 여성에 대한 폭력 - 인권의 침해

지난 몇 년 동안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점점 대중적인 관심사가 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법률의 제정에 있어서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1993년 6월, 비엔나에서 열린 국제 인권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모든 다양한 형태의 폭력은 여성 인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인정했다. 그해 12월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선언이 UN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 선언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폭력중 한가지 형태는 '매춘의 강요와 여성의 인신매매'이다.

2. 인신매매 피해자 처리를 위한 기본 규정

GAATW는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신매매 피해자의 처리에 관한 기본 규정에 대한 초안을 작성했다. 국내외 FORA로부터 준수될 수 있도록, 최종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이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권력을 가진 자로부터 박해나 탄압을 받지 않을 권리
- 법률적인 과정에서 적절한 통역을 받을 권리
- 형사상의 여러 과정에서 자유롭게 법적 도움과 변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법적으로 보장되는 보상에 대한 접근 권리
- 형사 / 민사 과정동안의 일시 체류 허가나 중인으로서의 충분한 보호와 같은, 여성들로 하여금 형사상의 고발을 요구하거나 민사상의 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규정
- 자국으로의 송환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의 체류에 대한 법적 허가 혹은, 송환을

원하는 경우의 귀국 지원

- 가해자나 권력에 의한 보복으로부터의 보호

3. 새로운 정의의 기본

여성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의 개발과 논의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은, 인신매매의 범주내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의 여러 형태들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의를 내리는 일이다. 많은 노력 끝에 ‘인신매매’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들이 변화하였다. 이 보고서는 아래에서 나열한 새로운 개념들을 통해 통찰력 있는 관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A. 신체적 모집(Recruitment)에서 상업적 착취로

타인의 매춘에 대한 착취와 인신매매의 억제를 위한 1949년 조약에서는 ‘알선을 통한 인신매매’와 ‘착취를 통한 매춘’을 결합시켰다. 매춘과 인신매매에 관해서 가장 최근에 국제적인 의견일치를 이룬 이 조약은, 이 확장된 정의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비준되지 못하고 있다.

B. 강압(Coercion)에서 동의(Concent)로

해당 여성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인신매매를 처벌할 수 있게 한 1933년의 국제협약을 통해 ‘강압’의 조건은 삭제되었다. 앞서 언급한 1949년 조약에서는 동의의 여부와 관계없이 매춘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와 착취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 결정은 다시 철회되었다. 1996년 1월 18일에 발표된 유럽 의회 결의문에서 “.....비효율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1949년 조약을 대체할 새로운 UN 조약을 기초하기 위하여.....모든 새로운 조약에서는 ‘강제성’과 ‘기만’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밝힌 것이다. 좀더 대중적인 수준의 논의에서, 어떤 여성이 매춘에 대해 동의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억압적이고 착취당하는 상황에 대해서 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의견일치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된다.

C. 여성 인신매매에서 불법 아주까지

불법 입국이나 체류는 해당 국가에서 범죄로 취급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결혼, 가정부, 예술가 등의 명목으로 합법적으로 입국하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불법 입국자의 수와 비슷한 상황이다. 또한, 여성 인신매매는 국가간의 아주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인신매매를 불법적인 아주나 체류로 정의한다면, 이 범죄는 더 이상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할 수 없다. 아주민 여성 스스로가 낯선 외국의 상황 자체에서 위험에 빠지거나 범죄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D. 보호무역론자에서 인권보호의 관점으로

1993년 6월 25일 발표된 국제 인권회의의 비엔나 선언은 ‘성(Gender)에 바탕을 둔 폭력으로서의 국제 인신매매와, 여성의 인권 보장을 통한 근절’을 주장하였다. 매춘을 폭력으로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매춘에서의 폭력적인 상황을 문제삼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지난 수십년간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을 위해 투쟁을 계속해온 세계 각국의 민간단체들은, 매춘을 직업으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의 강제 노동과 노예제적 악습의 근절을 위해 노력해 왔다.

E. 매춘에서 비공식적인 노동의 범주까지

‘여성 인신매매에 대한 1994년 UN총회 결의문’과 같은 최근의 변화된 결정은 새로운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매춘을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뿐만 아니라 가정부, 결혼, 혹은 다른 직업을 위해 인신매매가 이루어 지는 경우도 포함된다. 1979년 발표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협정 (CEDAW)’은, 노동법에서 비공식적인 노동에 관한 조항을 삭제한 것은 여성에 대한 간접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하였다. 1993년 비엔나 선언은, 매춘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결혼 등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강제노동과 노예제적 악습을 범죄로 취급해야 한다고 명백히 함으로써, 여성에게는 커다란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사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악습들에 대한 당국의 대처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사실 법이나 관습은 성차별적인 노동의 강요를 억제하기 보다는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여성들이 여러가지 상황에서 겪게되는 다양한 경험을 기초로 하여, 공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인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제노동, 열악한 생활조건, 그리고 악용되고 있는 직업알선 관행과 관련하여 보다 실질적인 정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를 신중하게 공식화시킬 수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 폭넓게 인정받고 있는 2개의 국제협정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1926년의 국제연맹 노예협약과 1956년의 추가협약, 그리고 제29차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협약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 협약들은 성별에 따라 특성화시킨 견해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성차별적인 악습에 대한 조정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실제적인 정의의 기본을 이루는 원칙은, 성(Gender)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과 신체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권'이다. 결혼, 가사노동, 매춘에서의 노동과 서비스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 한, 이러한 권리가 여성에게 특히 중요하다.

4. 인신매매, 강제노동 및 노예제적 악습의 원인이 되는

주요 요소

여성 인신매매, 강제노동, 노예제적 악습은 여성의 삶에서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인신매매 악습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원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릴 수 있다.

○ 가난과 실업

비정부 기구들의 자료와 관련 여성들의 증언에 따르면, 국외이주와 인신매매 관행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인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생존 본능 때문이다.

취업의 기회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다른 대안이 없는 여성들은 이주를 선택하게 된다.

○ 개발 정책

관광산업, 산업화, 국제화는 여성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 이주 정책과 노동법

현재 외국인 관련 정책이, 비공식적인 가사노동-결혼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과 관련해서는 여성 인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 부패한 공무원

인신매매, 강제노동, 노예제적 관습과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보고서는 지역, 규모를 떠나서 수도 없이 많다.

○ 전통적인 관습

전통적인, 지역적인 관습들이 인신매매와 노예제적인 관습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폭력적인 악습들은 일반적이고 사적인 가족의 문제로 취급되고 있다.

○ 높은 소득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강제 채용과 강제 노동은 범죄와 연루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본의 야쿠자와 같은 조직 범죄단들이 이러한 일에 관여하고 있다.

○ 민간인과 군인의 충돌

전쟁기간 중에는 여성에게 강간과 강제노동과 같은 학대행위가 가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많은 미얀마 여성들은 자국 내에서 임금도 받지 못하는 상태로 군인들에게 매춘을 강요당하기 보다 태국의 섹스 산업에 종사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하지 않으며, 필연적으로 여기에 대한 전술적 대응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의 지위는, 여성, 매춘여성, 가사노동자, 아내, 이주민, 이주민 노동자, (조직) 범죄의 피해자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결정된다. 다양한 전술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며, 반드시 어떠한 하나의 접근방법이 옳거나 그르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여성에 대한 다양한 전술의 효과를 평가하고 있다. '억제 정책'은 여러 나라 정부들이 이주 조절과 같은 국가간의 이해관계나 민족의 단일성이라는 측면에서 취하고 있으며, 반면 주로 비정부 기구에 의해 선택되는 '강화 정책'은 여성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5. 강화 정책은 다음과 같은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윤리적 문제로서의 인신매매

비정부 기구들은 매춘여성에 대한 비난과 주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신매매의 피해자를 타락한 여성이라고 단정짓는 사회적 편견과 여성에 대한 이분법적인-좋은 여성과 나쁜 여성-분류를 해소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또한, 이 단체들은 매춘여성에 대한 법적인 보호와 대안적인 직업의 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몇몇 단체에서는 인신매매에 대한 논쟁의 초점을, 윤리적인 입장에서 특수한 노동조건과 매춘여성을 위한 안전조치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윤리법의 제정과 강요, 기만, 폭력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춘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인신매매의 개념을 가사노동, 결혼과 같은 다른 형태의 착취까지

포함하도록 확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조직) 범죄 문제로서의 인신매매

범죄와 관련해서 민간차원의 대응방법은, 여성 개개인에 대한 법적지원, 안전한 피난처 제공, 상담, 의료지원, 불만사항 접수, 재판과정에서의 협조, 즉결추방의 방지, 석방을 위한 변호 등이 있다. 또한, 비정부기구들은 경찰과 법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으며, 여성 인신매매가 범죄로 취급되도록 로비를 벌이고 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불만사항들이 중요하게 취급되고, 가해자들이 실제로 처벌을 받으며, 거주허가를 얻을 수 있고, 적절한 증인보호를 받으며, 본국으로의 송환이 당사자에게 안전하지 않을 경우 국제규약에 따라 영주권을 얻거나 정치적 피난처에 머무를 수 있는 인도적 권리를 누리는 등의 피해자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 이주문제로서의 인신매매

여성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비정부기구들은 이주문제를 여성들을 위한 생존전략으로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자국뿐만 아니라 상대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대국가에서 좀더 나은 법적 지위를 갖게 되거나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노동문제로서의 인신매매

본질적으로, 비정부기구들은 노동구조의 틀안에서 전략을 세운다. 여기서 기초가 되는 것은 법률적 지원, 언어교육, 노동상담과 같이 여성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지원사업들이다. 또한 매춘이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받는 것, 대안적인 직업 프로그램을 스스로 조직하고 발전시키는 것과 같은 (이주민)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노력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국제노동기구는 이주민 가사노동자(가정부)나 유통업에 종사하는 이주민 노동자들과 같은 비공식적인 부문에서의 여성 노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 인권으로서의 인신매매

인권과 관련되어 수립된 전략은, 비정부기구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다. 노동조건에서의 강제성, 기만, 폭력, 권리의 남용들을 인권침해 문제로서 접근하는 것은, 매춘에 반대하는 입장보다는 예속된 노동에 반대하는 입장에 가깝다. 이러한

관점은 직업의 종류보다는 억압적인 권리관계에 주목하고 있으며,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면서 열악한 조건들은 개선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다. 또한, 여성들이 자신의 육체, 삶, 직업, 이주에 관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매춘에 종사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폭력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49년 체결된 협정을 여성 스스로의 결정에 기초한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협정(CEDAW)'을 비준하기 위한 노력, 여성을 차별하고 주변화시키려는 모든 정책에 대한 반대, 여성에게 예속적인 악습을 강요하는 상황의 범위 - 결혼, 가사노동 등과 같은 비공식적인 부문까지 포함하는 - 를 확대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들은 이주제한정책, 처벌의 강화 등과 같은 억제정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억제효과도 미약할 뿐만 아니라 강제로 끌려온 여성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반면, 폭력에 반대하고 여성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전략도 있다. 비정부기구들은 좀더 명확하고 강화된 형사소송법의 요구와 더불어 사회적, 의학적, 법률적인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접근방법을 택하고 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성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우선, 여성 스스로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 전략의 최종적인 목적은 여성, 여성 이주민, 여성 이주민 노동자, 가사노동자, 매춘여성, 그리고 아내의 위치에서의 권리를 확고히 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여성 인신매매, 강제노동, 노예제적 악습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6. 권고사항

여성 인신매매, 강제노동, 그리고 노예제적 악습의 피해자를 위한 '최소기본규정(SMR)'과 새롭고 포괄적인 정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다음 사항들을 권고하고 있다.

- '노예제도의 현대포럼에 관한 실무그룹(WGCFS)'은 1949년 조약과, 국가책임의 범위와 본질을 평가해야 한다.
- UN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자료 중에서 인신매매, 강제노동, 노예제적 악습과 관련되어 실증된 여성들의 사례를 수집해야 한다.
- 각 국가들은 일정 비율의 기부금을 분담하여야 한다.

- 모든 여성들은 매춘을 포함한 어떠한 직업이나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완전한 법적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
- 매춘을 합법화하여야 한다.
- 매춘을 포함한 비공식적인 부분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노동기준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
- 관련여성들과 직접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는 비정부기구와 연대하여, 여성들의 이해와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여야 한다.
- 이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인신매매, 강제노동, 노예제적인 악습의 관련정보를 수집한다.

[실무 정의]

| 여성 인신매매 | 강제노동과 노예제적 악습 |
|---|--|
| 어떤 직업이나 서비스를 위해 국가 내에서 혹은 국가간에 벌어지는 여성들의 모집 그리고/또는 이동을 의미하며, 폭력, 폭력적인 처사, 권력의 남용, 우월한 지위, 빚에 의한 예속, 기만, 기타 여러 가지 형태의 강요에 의해 발생한다. | 폭력, 폭력적인 위협, 권력의 남용, 우월한 지위, 빚에 의한 예속, 기만, 기타 여러 가지 형태의 강요를 통하여 어떤 여성의 신체나 자아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 또는 어떤 여성으로부터 노동이나 서비스를 착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

[별첨자료]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E / CN.4 / 1995/ 42

1994. 11. 22

원본 : 영어

인권위원회 50회 회기 지역 안건 중 안건 11

위원회의 프로그램과 작업방법의 문제를 포함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촉진 및 장려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향상시키기 위한 유엔 체제내의 방법과 대안적인 접근 방법.

위원회의 결의안 1994/45에 따른

여성에 대한 폭력, 그 원인과 결과에 관해
특별보고관이 제출한 예비보고서,

라디카 쿠마라스와미(Radhika Coomaraswamy)

3. 매춘과 인신매매

(o) 일반적인 사항

205. 창녀들은 그들의 권리와 입장을 이해하는데 있어 서로 다르고, 취약성도 서로 다르며, 관 심도 서로 다른 이질적인 집단이다. 콜걸이나 에스코트는 경제적인 기반과 문화적 가족적인 유대 가 없는 해외로 팔려간 소녀들보다 비교적 부유하고 더 독립적이다. 창녀나 상업적인 성노동자는 (여기서는 CSW) 산업화된 국가에서 상당히 세련된 노조(대개 인정받지 못하는)나 운동에 속해 있 기도 하다. 이들의 아젠다는 종종 여성단체들의 것과 대립된다: 개도국의 CSW는 효율적인 지원 네트워크나 조직이 없다. 136/ 일부 여성들은 이성적인 선택에 의해서 창녀가 된다; 또 다른 이 들은 강압이나 속임수, 경제적인 노예상태때문에 창녀가 된다. 창녀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하나의 사회현상으로서 매춘이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특정적인 사회의 성적 관계를 집합시킨것이라는 전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매춘이 가지는 유일한 공통요소는 경제적인 것이다: 매춘은 고객과 노동자간에 상업적인 무관심이 특징을 이루는 어떤 수입을 생산 하는 활동이다.

206. 전세계적인 CSW인구 크기는 알려져있지 않다. 추산되는 숫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다. 예를 들어 태국에서는 여성창녀의 추정숫자가 7만에서 이백만까지 다양하다. 137/ CSW들은
보통 숙련되지 않은 여성노동자들에 비하면 보수를 잘 받는 편이다. 138/ 한국에서는 CSW가 연
간 4500불에서 9000불까지 번다. 반면 섬유산업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는 연간 135불에서 480불
까지 번다; 네덜란드에서는 CSW가 연간 3만불을 번다. 반면 섬유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15000불을 번다. 139/ CSW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상업적인 성산업에 조직적으로 종사하는 사람
들의 엄청난 수입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여행사, 호텔/바, 항공사, 포추와 마담) 140/ 경제
적인 이득이야말로 상업적인 성산업의 문제점에 대한 무관심과 그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설명
해주는 것이다.

(b) 학대의 성격

207. 이런 거대한 경제적인 이유때문에 CSW들은 특히 경제적인 차취에 취약하다. 지배와 유대의 성격이 각 CSW가 처한 사회 경제적인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그들은 모두 어느정도 차취의 대상이 된다. 그들은 보통 그들 수입의 아주 작은 양만을 얻는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CSW가 서비스로 번 돈인 350마르크중 80마르크만 차지한다. 141/ 하지만, 독일 창녀의 경우는 빚에 빠져나들이고, 자신이 번 수입의 할당을 전혀 받지 못하는 창녀들의 경우보다 나은 편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매춘은 불법이기 때문에 혹은 합법이라 할지라도 규제가 엄격한 나라들에서 CSW들은 많은 법적이고 도덕적인 고립에 직면한다. 그들의 법적 지위는 취약하며, 사회적인 지위도 낙인찍힌 상태이다. 매춘이 불법인 나라에서 그들은 구금의 대상이 되고, 만약 불만을 제기하면 학대를 받을수도 있다. 혹은 그들은 지방 경찰관들에게 도와달라고 뇌물을 주기도 해야한다. 142/ 창녀를 강간하는 것은 일부 나라에서 법적인 면에서 강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은 매춘이 합법화된 나리에서도 별 차이가 없다: 창녀는 그녀의 포주, 매니저, 혹은 경찰로부터 강간을 포함한 여러 학대의 대상이 될수 있다. 사회적인 낙인은 많은 여성들을 그들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고립시킨다. 이는 특히 비극적인 아이러니다. 왜냐하면, 많은 창녀들이 그들의 부모와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해 일하기 때문이다. 143/

208. CSW들은 또한 광범위한 보건위협을 받고 있다. 성적 전염병(STDs)들은 CSW들에게 만연하다. CSW들은 고객과 성교를 거부하거나 콘돔 사용을 주장할 충분한 자치권이 거의 없다. HIV/AIDS는 CSW들에게 가장 큰 위험요인이다. 아시아 위치에 의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태국의

소녀창녀들 19명중 14명이 양성반응을 보였다. 남성에 의한 여성 에이즈 전염은 여성이 남성에게 전염시키는 것보다 세배나 더 높다. 144/ 이는 그 바이러스가 창녀집단을 통해서 급속히 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창가 여성들 사이에서 depo provera(지속성황체호르몬)주사바늘을 나누어 쓰거나, 혜로인 주사바늘을 나누어 쓰는 것은 창녀사회에서 HIV-AIDS전염률을 높이는 요인이다. 145/ 그들의 불법적인 지위 때문에 창녀들은 대부분 적합한 의학치료를 받지 못한다. 비록 세계보건기구의 지침을 위반하고 사창가에서 일하는 CSW들이 강제적으로 HIV/AIDS 테스트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들의 경제적인 취약성은 그들로 하여금 고객과 매니저로부터 그들의 의학적인 상태를 최대한 숨기도록 만든다. 146/

209. 창녀들은 그들의 노동력으로 이익을 얻는 다양한 조직적, 구조적인 집단에 대단히 의존적이다. 이들은 법을 조종하는 이들, (경찰관, 사창가 소유자, 이민관리들) 광고와 오락산업을 통제하는 이들, 포르노와 우편주문 신부산업, 혹은 여행사, 항공사, 식당, 그리고 섹스숍들이 포함된다. 이런 집단들로부터 그들이 직면하는 폭력은 고객을 거부하는데 따른 구타등 다양하다. 여성 창녀들은 고객들이 그들에게 기이하고, 굴욕적이고, 고통스런 행위를 하도록 요구한다고 말한다. 이는 부분적으로 포로노 문학에서 나온것이고, 또 일부는 상업적인 성의 익명성과 개인적인 성격이 그 원인이다. 국제적인 매춘시장은 부분적으로는 에이즈 공포때문에 “신선한” 혹은 처녀를 요구하는 경향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다. 처녀에 가해지는 프리미엄은 나이든 CSW들이 그들 자신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풍토를 만들었다. 147/ 경험 많은 도시의 CSW는 그들의 직업적인 위치가 어린 농촌 출신의 소녀들에 의해서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그들은 결과적으로 이런 학대적인 조직들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

210. 매춘을 위한 여성과 어린이 밀매는 섹스 산업에 있어서 발생되는 악습을 측정하는 잣대가 된다. 세계 도처에서 여성에 대한 밀매가 증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HIV/AIDS 공포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있다. 더 많은 의화 수입을 벌기 위한 개도국의 압력때문에 증가하는 섹스 투어리즘은 남성의 성생활에 대한 사회적인 목인과도 관련이 있다. 148/

211. 밀매된 여성들은 대부분 그들 앞에 놓여있는 상황을 알지 못한다; 일부 여성들은 포주나
매니저들에게 직접적으로 접촉하지만 대부분 여성들은 그들의 부모, 남편, 남자 친구들에 의해
혹은 친구들이나 마을의 나이든 사람들에게 속거나, 강탈당해 팔려간다. “우편주문 신부산업”은
여성매매에 있어서 한 부분을 차지한다: 부유한 남편과 안전한 가족환경을 다른 나라에서 구할것
이라 믿었던 여성들은 도착하자마자 매춘을 강요받을수 있다. 149/

212. 매춘을 목적으로 해외로 팔려간 여성들은 가장 학대가 심한 사창가, 바, 살롱에서 일을 하게 된다. 이런 여성들에게 처해진 상황은 끔찍하다. 아시아워치와 여성권익단체는 베어마에서 태국으로 팔려간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했다. 그 연구에 의하면 태국의 사창가로 팔려간 여성들은 하루에 10시간내지 14시간을 일하고, 약 10명의 손님을 하루에 받는다고 한다. 이런 여성들이 사는 방의 평균 크기는 약 가로 세로 평균 2미터 내지 2.5미터이다. 만약 운이 좋으면 그들은 생리기간동안 몇일을 쉴수 있다. 고객들이 사창가 주인에게 더 많이 지불하지만, 보통 여자들은 사창가 주인으로부터 하루에 일달러 조금 넘게 받는다. 그들은 이 돈으로 그들의 음식과 숙박비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이들 여성중 다수가 빚으로 묶여 있으며, 이는 처음 팔려갈때 그들 부모에게 지불되어진 돈을 갚아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여권을 압수당하거나, 육체적인 학대를 통해 사창가에 불법적으로 감금되기도 한다. 한 알려진 사건으로는 태국에서 5

명의 소녀창녀들이 불에 타죽은적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침대에 묶여 있어서 도망갈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213. 아시아위치가 인터뷰한 30명의 여성중 단지 2명만이 20세 이상이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10살짜리 소녀들이 고객들에 의해 강간되었을때 고통으로 기절한 사례들이 있다. 태국에서 세이하' 소녀들과 성교하는것은 법적인 강간행위이다. 그러나, 강간범을 벌주는 대신 즉 고객이나 사창가 주인을 공모자로 벌주는 대신 태국에서는 고소한 소녀들이 종종 체포되고, 벌금을 지불할 경우 사창가로 되돌려 보내진다. 밀매되는 여성들은 보통 뇌물을 받은 국경감시인들과 함께 국경을 건너 수입된다. 밀매 회생자들은 경찰이 자주 공짜로 사창가를 드나든다고 말한다. 불법적인 이민으로서의 그들의 지위는 더욱 취약하여 성적, 경제적, 육체적 학대를 받기 쉽다. 의학적인 치료는 파임약이나 depo provera를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151/ 재활과 추방센타는 종종 부폐한 경찰과 사창가 주인에 의해 쓴 가격으로 섹스 노동자를 스카우트하는 장소가 된다. 152/

(c) 입법

214. 대부분 국가들은 매춘을 불법화 시키거나, 매춘 행위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153/ 그러나, 어떤 나라의 입법도 효과적으로 혹은 적절하게 매춘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지 못했다. 그리하여 법적인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인 섹스산업은 계속 번창해왔다. 창녀들에게 찍힌 낙인은 그들이 앞으로 나서서 당국에 중언하기를 거리게 만든다; 반면 그들의 고객들은 비밀스러운 환경속에서 더 자유를 느낀다. 고로 상업적인 섹스산업은 법망을 피하려는 많은 동기를 가지고 있다. 매춘이 주로 지역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입으로 전하는 말, 암호화된 언어, 그리고 지역사회와 국가의 공모에 의존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을 피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215. 서너개 국제기구는 매춘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국가들은 국제민간정치권리협정과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철폐협정에 따르도록 장려되어야한다. 이 협정의 6조에 따르면 해당국과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철폐협정에 따르도록 장려되어야한다. 이 협정의 6조에 따르면 해당국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밀매를 막고, 여성의 매춘착취를 막기 위해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 조처들은 매춘을 둘러싼 착취적인 집단들을 차별하기 위해 입법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성문법상 강간죄 구성의 나이를 18세로 올리고, 이 법을 어기는 고객들을 엄격히 처벌하는것; 그리고 정부 관리들에 의한 학대와 공모 혐의를 조사하는 청문위원회를 설립하는 것등이다.

216. 특별보고관은 또한 소수민족보호와 차별방지철폐소위원회의 현대 노예제에 대한 특별조사단의 작업을 주목하고 있다. 이는 인신매매 및 매춘착취방지 프로그램의 초안과 협력하고 있다. (E/CN.4/1994/71, annex) 그리고 인권위원회가 현 회기에서 그 초안된 프로그램을 검토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217. 인신매매 및 매춘착취방지 프로그램 협정에 따르지 않는 국가들은 시급히 그것에 따르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그 협정은 국가들이 모든 사람을 밀매와 매춘의 착취로부터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국가가 회생자들의 보호치료를 위해 또, 밀매회생자들을 행선지 국가의 동의하에 송환시키고 또 회생자가 송환에 드는 비용을 지불할수 없으면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적합한 조항을 만들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19조)

218. 국가들은 어린 소녀들을 매춘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즉, 세심하게 고용에 이전시들을 감시하고, 광고와 포르노 단체들을 감시해야 한다. 어린이 권리보호 협정은 국가들이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이고 교육적인 방법들을 이용해서 어린이를 모든 형태의 육체적, 정신적인 폭력, 부상과 학대, 태만이나 소홀한 대우, 성적인 학대를 포함한 착취와 학대에 대하여 모든 적합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어린 소녀들을 매춘으로 끌어들이는 경향은 심각하고 시급한 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문제이다. 어린이 매매, 매춘, 그리고 아동 포르노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들은 이런 관행이 만연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154/

219. 창녀를 밀매하고 학대하고 착취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많은 단체들이 이런 폭력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유일한 방법이 매춘을 합법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입법이 CSW를 보호할 노동보건 단체를 법률로 규정할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와 문화는 이런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도덕적인 비난이나 매춘과 밀매와 관련된 활동을 범죄화시키는 것만이 이 지구상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시키는 유일한 방법들이라고 믿는다.

4. 해외취업여성 근로자에 대한 폭력

(a) 해외취업여성근로자들은 국내외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상승추세를 대변한다. 비록 남성근로자보다 보수를 적게 받지만 이들 여성들은 가정의 수입원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155/ 1980년 이후 이들 여성해외취업근로자의 수는 남성과 비교해 수적으로 월등히 앞서가고 있다. 해외취업여성근로자 중 72퍼센트가 아시아에서 일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11퍼센트, 북미에서 8퍼센트 그외 지역에 분포된 인구가 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156/

221. 이들 근로자들은 본국에서 보다 외국에서 받는 보수가 몇 배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난을 덜어보자는 이유에서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진출한다. 이들 근로자들은 본국뿐아니라 이들이 실제 일하고 있는 당사국에도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해외취업여성근로자들이 본국에 송금하는 외화는 이들이 일하는 외국보다 훨씬 가난한 본국정부에 큰 기여를 한다. 스리랑카의 예를 들자면 해외취업여성 근로자들이 본국에 송금하는 외화가 스리랑카 정부의 외화수입의 두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157/ 이주근로자들이 일하는 국가는 노동력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특정분야의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이해관계로 인해 해외진출 이동근로자들은 사회적 추세라고 볼 수 있다.

222. 해외취업 여성노동력 또한 기술직(간호원, 비서, 교사)에서부터 단순노동직(가정부, 웨이트레스, 하충공장직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기술직 근로자들은 해당국 근로자보다 보수가 적어도 교육수준이 높고 단순노동직에 비교해 보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여성들이 경험하는 직장에서의 폭력이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단순노동자, 특히 가정부의 경우에는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종류또한 다양하다.

223. 국내단순직 이주근로자는 보통 남편과 자식, 혹은 남녀 각각의 단체로 움직인다. 이들에게 언어장애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단체의 사람들에게 받는 폭력에서 보호받을 수도 있다. 158/ 해외 단순이동직 노동자들은 국내노동자보다 불리하다. 이들은 해외에서 불법노동을 하며 언어도 낯설고 동질의 사회단체로부터 고립되어 생활하고 있다. 연구조사에 의하면 국내노동자들과 비교해 해외에 나가있는 근로자들의 교육수준이 높다고 하지만 대다수의 이주근로자들은 자신들의 권

리를 정확히 파악할 정도의 교육수준에는 못미치고 있다. 159/ 따라서 이들은 해외거주시 고용주나 취업알선소의 농간에 대처할 방법이 없이 당하는 경우가 많다.

(B) 폭력의 양상

224. 해외여성근로자들이 겪는 폭력의 특성은 다양하다. 만성적 보도부족(보도된 사건의 조사부족 등)으로 인해 문제가 어느정도인지 정확한 보도가 어렵다. 보도된 폭력은 신체적, 비신체적 폭력 두가지로 나뉘어진다. 이러한 폭력의 실상은 다음과 같다.

(1) 비신체적 폭력

225. 일반적으로 보도된 비신체적 폭력형태는 이주여성의 비자나 증명서를 압수하는 방법이다. 고용주가 여성에게 비자분실 우려가 있다는 구실로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비자를 보관하지만 실제의 경우는 고용인을 끌어두는 역할을 한다. 특히 외국인에게 항시 합법적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갖고다니라고 요구하는 국가에서는 고용주의 직장을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된다. 고용주의 집에서 도망쳐 본국대사관에 피신요청을 하는 여성에게 있어서는 보호요청을 받을 수 있는 시민권을 제시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226. 노동법은 불법근로자에게 해당되지 않고 일부국가에서는 합법적 국내근로자도 노동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주여성근로자들은 고용주가 계약한 임금지불을 연기하거나 혹은 계약조건보다 적은 월급을 지급함으로써 채무로 인한 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특히 국내근로자들이나 노동착취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해야하고 한 조사에 의하면 국내근로자들의 72%가 전혀 휴일을 갖지 못했다고 한다. 160/ 국내근로자들은 고용주가 식사제공을 충분히 하지않으며 보통 남은 음식을 준다고 말한다. 이러한 폭력으로 인해 여성근로자들은 고립된 상태에서 폭력을 당하거나 고용주의 독단적 행동을 당하는 수가 허다하다.

(2) 신체적 폭력

227. 이주여성에 대한 신체적폭력을 기록한 종합보고서는 쿠웨이트에서 일하는 아시아정부 학대에 대한 1992년 중동위치이다. 161/이 보고서에 기록된 문제점은 홍콩, 싱가포르, 북아프리카 일부지역에서 보도된 문제와 흡사하지만 이러한 폭력사태가 전후 쿠웨이트에서 현저히 증가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인에 대한 쿠웨이트인들의 적대감이 확대된 결과라고 본다.

228. 중동위치가 조사한 60건중 3분의 2는 고용주가 발로 차거나 구타하고 얼굴을 때리거나 꼬집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사례를 들었다. 나머지 3분의 1은 가정부에게 직접 성폭행이나 강간을 한 경우다. 162/ 구타는 보통 강간이나 강간미수를 수반한다. 심각한 경우에는 이러한 성폭행이나 강간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피해로 여성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163/ 중동위치보고서는 아시아 여성가정부 전체가 고용주에게 폭력을 당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폭력은 일반적인 추세라고 했다.

229. 여성이주근로자들은 경찰의 시달림 또한 겪는다. 기록된 바에 의하면 고용주의 강간을 신

고한 여성들은 경찰의 조치로 다시 고용주에게 되돌려보내지거나 혹은 경찰서에서 신체적, 성폭행을 당한다는 것이다. 신고를 한 여성들은 무기한 경찰서에 감금된다. 쿠웨이트에서 일하던 중 주인집에서 도망치다 다친 여성은 쿠웨이트의 자살금지법 위반혐의를 받았다. 164/ 경찰은 신고된 신체적폭력에 대한 조사를 등한시하고 있다.

(C) 법안

230. 국내외정부는 이러한 이민근로자의 유입, 유출을 막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민과 노동법을 쉽게 피할 수 있는 개인, 혹은 미동록알선업체가 대다수의 이민근로자를 확보하고 있다. 165/ 이주민들의 국외진출을 막으려했던 방글라데시나 인도는 정부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근로자들이 대규모로 국외로 빠져 나갔다. 저임금에 사회적으로 인정을 못받는 일자리를 기피하는 노동력으로 인해 이러한 직장은 이민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측에서 특별히 이들을 위한 규제를 할 필요성을 못느낀다. 유럽일부국가에서는 이들을 합법화시키려했지만 추방의 두려움으로 신고를 꺼리는 탓에 소수만이 혜택을 받았을 뿐이다. 이탈리아에서는 불법노동력을 없애려고 벌금과 징역을 제도화했지만 이러한 해결방법은 실행이 어렵고 이 법으로 인해 처벌을 받는 쪽은 고용주가 아닌 근로자라는 이유로 인해 비난을 사고 있다.

231. 최근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81년 캐나다는 고용허가제도의 일환으로 외국국내고용자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임금비, 근로시간, 혜택등 자세하게 명시된 계약서를 통해 이들이 더 나은 직장을 다닐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또한 확실한 직책과 고용주밀에서 이년 연속근무한 근로자를 위한 영주권신청을 간소화했다. 이 기구가 이민근로자의 합법화와 보호에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반면 임금을 낮추고 노동자들이 국내에서 일을 못하도록 운신의 폭을 좁혔다는 비난도 사고 있다.

232. 코라손 아키노대통령하의 필리핀정부는 해외근로자 복지행정부(OWWA)를 설립하여 취업알선소를 규제하고 근로자들이 해외로 진출하기전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구입가능한 주택을 얻을수 있고 수입을 벌 수 있는 협동조합을 권장할 목적으로 연간 백십만의 노동창출을 약속했다. 마리티우스정부는 최근 해외노동조사부를 설치해 취업알선소를 관리하고 근로자들에게 출국전 도움을 베풀 목적이다. 이러한 정부측 노력은 해외취업여성들이 비밀리에 취업되기보다 국가적으로 이들을 돋자는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D) 국제기구

233. 해외취업여성들에 대한 폭력방지를 위해 일하는 국제기구가 많다. 이를 기구들은 취업나가는 국가로 하여금 취업여성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알릴 의무와 이들을 받아들이는 외국정부로 하여금 외국인 인권보호를 보장케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구들이 제시한 항목과 인권단체에서 준비한 보고서내용을 토대로 한 추천사항은 다음과 같다.

- (I) 해외취업여성들을 보유한 사설취업소에 대해 각 정부는 궁정적인 방향에서 이들을 단속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로 필리핀의 OWWA와 같은 행정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
- (II) 관련국가에서는 취업여성에게 법적, 사회적, 교육적 원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 (III) 폭력신고를 하는 해외취업여성들을 담당할 여성학 훈련이 실시되어야 한다. 구류중인 여성

근로자는 여성관이 동석한 경우에 한해서 남자경찰과의 면담을 허용해야만나.

- (iv) 각국 대사관은 이들 아주근로자들이 피난요청이나 경찰에 수감될 경우 효과적으로 이들을 돕기 위한 준비를 갖춰야한다. 167/
- (v) 해외취업여성들을 국내최저노동기준법 보호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 국내노동기준법을 위반한 고용주는 형사처벌을 받아야한다.
- (vi) 각 국가는 세계노동기구가 정한 다양한 지침과 추천에 부합하는 국내 노동기준법을 설정해야 한다. 168/
- (vii) 폭력이 존재하는 기본문제는 정부의 무관심이나 태만이 원인이다. 대부분 국가들이 노동보호법 실행을 않고 있다. 이러한 태만에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
- (viii) 노조는 해외취업여성들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원조해야 한다.
- (ix) 1993년 48회 유엔총회에서는 48/100결의안을 채택해 해외취업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제목하에 각 국가, 특히 취업노동자를 파견하고 이들을 받아들이는 국가에서는 취업여성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규정화했다. 또한 아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문제의 범주와 이 결의안실행을 위한 향후조치를 추천하기 위해 유엔기구와 전문기관, 국제기관 비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사무총장에게 정확한 보고를 하도록 요청했다. 이러한 결의안은 주목할 만하며 이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지닌 관련단체와 기구에서는 사무총장에게 활동적으로 정기적 보고를 해야한다.

234. 해외취업 아주를 초래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는 이쩔 수 없다; 해외취업 아주는 정지도 금지시켜서도 안된다. 해외이주를 막으려는 노력보다 여성들에게 최대한의 보호를 해주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취업여성들이 공식적 인정을 받고 인구구성원으로써 국가의 보호를 받는 효과적 법적 제도를 갖추는게 이들 취약성을 가진 여성들에 대한 폭력을 효과적으로 시정하는 출발점이 되야 한다.

[별첨자료]

ILO 자문대상 핵심 협약

○ 자문대상 핵심 협약

- 제29호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
- 제105호 강제근로폐지에 관한 협약
- 제100호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
- 제111호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 제138호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제 29 호 협약

強制勤勞에 관한 協約

* 효력발생 : 1932년 5월 1일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사무국 이사회가 1930년 6월 10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14차 회기
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의제 1에 포함된 강제근로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
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30년 강제근로 협약이라고 하는 다음의 협약을 1930년 6월 28일 채택한
다.

【제 1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가능한 한 조기에 모든 형태의 강
제근로의 사용을 폐지할 것을 약속한다.
2. 강제근로의 완전한 폐지를 위하여 강제근로는 공업의 목적, 경과기간 중
및 예외적 조치가 아닌 한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에서 규정하는 조건 및
보장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이 협약의 효력발생후 5년의 기간이 만료하고 또한 국제노동사무국 이사
회가 이 협약 제31조에 규정된 보고를 작성할 때 이사회는 다시 경과기간
을 두지 아니하고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를 폐지할 것인가의 여부 및 이 문
제를 총회의 의제사항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 2조】 1. 이 협약에서 '강제근로'라 함은 어떠한 자가 치벌의 위협하에서
강요받거나 또는 임의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무를 말한다.
2. 다만, 이 협약에서 '강제근로'라고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는 포함되지 아
니한다.

(가) 전적으로 군사적 성격의 작업에 대해서 병역의무법에 의해서 강요되는
노무

(나) 완전 자치국의 국민의 통상적인 公民의 의무를 구성하는 노무

(다) 법원 판결의 결과로 강요되는 노무. 다만, 공공기관의 감독 및 관리하에
서 행해지며, 私人·회사 또는 단체에 고용되거나 또는 그 지휘에 복종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긴급한 경우, 즉 전쟁의 경우나 화재, 홍수, 기근, 지진, 심한 전염병이
나 가축 전염병, 짐승이나 곤충류 혹은 식물류 등 해로운 물질에 의한
침입과 같이 재해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일반적으로 주민의 전
부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행복을 위태롭게 하는 일체의 사정에 의해 강
요되는 노무

(마) 공동체의 직접적 이익을 위해서 '주민에 의해 수행되고 따라서 당해 주민
이 부담하여야 할 통상적인 公民의 의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소규모 공
동체의 노무. 다만, 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공동체의 직접적 대표자에게
는 이러한 의무의 필요에 관한 협의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 3조】 이 협약에서 '권한있는 기관'이라 함은 본국의 기관 또는 관계있는
지역의 최고중앙기관을 말한다.

【제 4조】 1. 권한있는 기관은 私人·회사 또는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강제근
로를 강요하거나 강요를 허가할 수 없다.

2. 한 회원국에 의한 이 협약의 비준을 국제노동사무총장이 등록한 시점에
private·회사 또는 단체의 이익을 위한 강제근로가 존재하는 경우에, 당해 회
원국은 이 협약이 회원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그 강제근로
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제 5조】 1. 私人·회사 또는 단체에 발급되는 민히가 私人·회사 또는 단체
가 이용하거나 거래하는 생산물의 생산 또는 수집을 위한 어떠한 형태의 강
제근로를 초래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2. 이와 같은 강제근로를 초래하는 규정을 포함한 민히가 존재하는 경우 이
협약 제1조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를 폐지하여
야 한다.

【제 6조】 행정관청의 직원이 자신의 책임하에 있는 주민에 대하여 어떠한 형

태의 근로에 종사하도록 장려하는 직무를 갖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민의 전부 또는 그중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私人·회사 또는 단체를 위하여 근로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제7조】 1. 행정상의 직무를 행하지 아니하는 기관의 장은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다.

2. 행정상의 직무를 행하는 기관의 장은 권한있는 기관의 명시적 허가를 받아 강제근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협약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3. 적법하게 승인받은 기관의 장으로서 나른 형태로 적당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개인의 노무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적당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1. 강제근로를 사용하는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은 관계지역에서 시정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에 있다.

2. 다만, 국제노동기구는 근로자의 평상시의 거주자로부터의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강제근로를 강요할 권한을 최고지방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직무수행중인 행정관청 직원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정부저장품의 운송을 위하여 근로자의 평상시의 거주자로부터의 이전을 수반하는 강제근로를 강요할 권한을 이 협약 제23조에 정하여진 규칙에 규정해야 할 기간 및 조건에 따라 최고지방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이 협약 제10조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근로를 강요할 권한있는 기관은 강제근로의 사용을 결정하기에 앞서 다음 각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의무적인 노무의 내용이 이를 필요로 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중요한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일 것

(나) 이러한 노무가 현재 급박하게 필요한 것일 것

(다) 이러한 노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유사한 노무에 대해서 관계있는 지역에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임금률 및 근로조건을 제공하더라도 임의노동을 구할 수 없을 것

(라) 이용할 수 있는 노동력 및 현재 주민이 이러한 노무를 수행할 능력을 고려하여 이러한 노무가 과중한 부담을 주민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닐 것

【제10조】 1. 조세에 의하여 강요되는 강제근로 및 행정상의 직무를 행하는

기관의 장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제근로는 점진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2. 폐지할 때까지 강제근로가 조세로써 강요되는 경우 및 강제근로가 행정상의 직무를 행하는 기관의 장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권한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의무적인 노무가 이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해서 중요한 직접적인 이익을 갖는 것일 것

(나) 이러한 노무가 현재 급박하게 필요한 것일 것

(다) 이용할 수 있는 노동력 및 현재의 주민이 이러한 노무를 행할 능력을 고려하여 이러한 노무가 과중한 부담을 주민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닐 것

(라) 이러한 노무가 근로자의 평상시의 거주자로부터의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할 것

(마) 이러한 노무가 종교, 사회생활 및 농업의 필요에 따라 수행되어야 할 것

【제11조】 1. 추정연령이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건강한 성인남지만을 강제근로에 징집할 수 있으며, 이 협약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종류의 근로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제한 및 조건에 따라야 한다.

(가) 관계자가 전염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소요근무 및 수행조건에 신체상 적합함을 행정관청에 의해서 입명된 의사가 가능한 모든 경우에 미리 결정할 것

(나) 학교교사 및 학생, 행정관청의 직원을 제외할 것

(다) 각 지역에서 가족생활 및 사회생활에 불가결한 건강한 성인남자의 수를 유지할 것

(라) 부부 및 가족관계를 존중할 것

2. 제1항 (대호)의 적용에 있어서 이 협약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규칙은 한 번에 강제근로에 징집할 수 있는, 상주하는 건강한 성인남자의 비율을 정해야 한다. 다만, 이 비율은 어떠한 경우에도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비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권한있는 기관은 인구밀도, 주민의 사회적·신체적 발달, 계절 및 관계자가 그 지방에서 자신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직업을 창작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관계있는 지역의 일상생활의 경제적·사회적 필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 1. 어떠한 자가 12월 중 일정기간에 모든 종류의 강제근로에 강제될 수 있는 최장기간은 근무장소를 왕복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강제근로를 강요받는 근로자에게는 강제근로의 종료시에 강제근로기간을 명시하는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 1. 강제근로가 강요되는 자의 평균근로시간은 임의노동의 경우에 통상 행하는 것과 동일하여야 하며, 평균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임의노동의 경우에 초과시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행하는 비율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어떠한 종류의 강제근로가 강요되는 모든 자에 대해서는 1주일에 1일의 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 휴일은 관련지역 또는 관련지방의 전통이나 관습으로 정해진 날과 가능한 한 일치하여야 한다.

[제14조] 1. 이 협약 제10조에서 정하는 강제근로 이외의 모든 종류의 강제근로는 노동력이 사용되는 지역 또는 노동력이 징집된 지역의 어느 쪽에 대해서건 유사한 노무에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비율(어느 쪽이 높은지는 불문)보다 낮지 아니한 비율로 현금으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2. 기관의 장에 의하여 그 행정상 직무의 집행에 사용되는 노무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금의 지급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3. 임금은 각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역의 기관의 장 또는 기타의 기관에게 지급되어서는 아니된다.

4. 임금지급의 경우 노무장소로의 왕복에 소요되는 일수를 근로일수로 계산하여야 한다.

5. 本條는 일용의 양식을 임금의 일부로 지급하는 것을 금하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양식은 그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과 직이도 동일한 가치이어야 한다. 다만, 조세의 지급을 위한 것, 작업의 특수한 상태하에서 노무수행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특수한 음식물이나 회복 혹은 숙박을 위한 것, 공구류의 공급을 위한 것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제15조] 1. 근로로 인한 재해 또는 상병에 대한 근로자보상에 관한 법령 및 사망하거나 노동불능으로 된 근로자의 피부양자를 위한 보상을 규정하는 법

령으로서 관련지역에서 실시되고 있거나 실시되어야 하는 것은 강제근로와 임의근로에 균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 근로로 인한 재해 또는 질병에 의하여 스스로를 부양할 능력이 전부 또는 일부 상실된 자의 생계를 확보하고,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자의 생활을 확보해 주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를 강제근로에 사용한 기관의 의무이다.

[제16조] 1.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강제근로가 강요되는 자는 음식물 및 기후가 평소와 현저히 달라서 건강을 해하게 되는 지역으로 이송되어서는 아니된다.

2.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를 그 상태에 적용시키고 또한 그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생 및 숙박에 관한 모든 조치가 엄격히 실시되지 아니한다면 근로자의 이송은 허용될 수 없다.

3. 이러한 이송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권한있는 의사의 권고에 따라 음식물 및 기후의 새로운 상태에 점차로 적용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이러한 근로자가 익숙하지 아니한 규칙에 따라 근로를 해야 할 경우에 그려한 규칙에 따라 근로하는 데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진진적 훈련, 근로시간, 휴식시간을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음식물의 추가공급이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근로자가 근무장소에 장기간 체류해야 하는 건실이나 유지를 위한 강제근로의 허가에 앞서 권한있는 기관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고 의료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1) 근로자가 노무를 개시하기에 앞서 혹은 노무기간중 일정기간마다 의학적 검사를 받도록 할 것

(2) 모든 요구에 따르는 데 필요한 약국, 병동, 병원 및 설비와 함께 충분한 의료요원이 존재할 것

(3) 근무장소의 위생상태 및 음료수, 식량, 인료, 취사도구 및 필요한 경우에는 기주 및 피복의 공급이 만족스러울 것

(4) 근로자의 생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특히 근로자의 청구나 동의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임금의 일부를 가족에게 송금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가족생계를 확보하기 위한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것

(다) 근로자의 노무장소로의 이동은 행정관청의 비용으로써 행정관청의 책임 하에 행할 것. 행정관청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운송수단을 가장 완전하게 사용함으로써 이동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라) 일정기간 노동불능을 초래하는 질병 또는 재해의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행정관청의 비용으로 송환하도록 할 것

(마) 근로자가 강제근로의 기간만료의 시점에서 임의근로자로 남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무료로 송환될 수 있는 권리가 2년간 상실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허용할 것

【제18조】 1. 여객 또는 화물 운송을 위한 강제근로, 예컨대 운반이나 선박의 노동은 가능한 한 단기간내에 폐지되어야 한다. 폐지할 때까지 권한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를 정하는 규칙을 공포하여야 한다.

(가) 직무수행중인 행정관청의 직원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경우, 정부 저작품의 운송을 위한 경우 또는 아주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나 직원 이외의 자의 운송을 위해서만 강제근로를 이용할 것

(나) 강제근로에 사용되는 근로자에 대한 의학적 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신체적 적성을 의학적으로 증명할 것. 이러한 의학적 검사의 실행이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체적 적성이 있으며 전염병에 이환되지 않도록 확보할 책임을 그 근로자의 사용자가 부담할 것

(다) 근로자가 운반할 수 있는 최대하중

(라) 근로자가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떨어지는 경우에 가능한 최대거리

(마) 근로자가 가정으로 귀환하는 데 필요한 일수를 포함한 1월 또는 다른 기간에 있어서 그 징용될 수 있는 최대일수

(바) 이러한 강제근로를 요구할 수 있는 자 및 강제근로를 요구할 수 있는 정도

2. 제1항 (다), (라), (마)호에 규정한 최대한도를 정함에 있어서 권한있는 기관은 당해 근로자가 징용되는 주민의 신체상의 발달, 근로자가 왕래할 필요가 있는 지방의 성질 및 기후상태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3. 권한있는 기관은 운반해야 할 중량과 통행거리뿐만 아니라 도로의 상태나 기후 및 다른 모든 관련요소까지 고려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통상적인 통근이 하루 평균 8시간 근로에 상당하는 거리를 초과하지 않을 것 및 통상적

인 일정을 초과하는 일정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근로자에게 보통의 비율보다 높은 비율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을 특별히 규정하여야 한다.

【제19조】 1. 권한있는 기관의 강제경직의 허가는 기근이나 식량의 결핍에 대한 예방수단이며, 항상 식량이나 생산물이 이를 생산하는 개인이나 부락의 소유에 귀속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하다.

2. 생산이 법령이나 관습에 의거하여 공동체를 단위로 하여 조직되고 또한 생산물이나 판매로부터 생기는 이익이 당해 공동체의 소유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이 조가 법령이나 관습에 의해 당해 공동체에 의해 공동체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노무를 수행할 당해 공동체 구성원의 의무를 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0조】 공동체 구성원의 범죄로 공동체가 처벌되는 단체처벌 법령은, 처벌 수단의 하나로서의 공동체에 의한 강제근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 강제근로는 광산에서의 쟁내근로를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2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이 이 협약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하여 국제노동기구 현장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노동사무국에 제출하기로 약속하는 연차보고는 각 관련있는 지역에 대해서 강제근로가 당해 지역에서 사용되는 정도, 강제근로를 사용하는 목적, 질병 및 사망률, 근로시간, 임금지급방법 및 임금률에 관한 가능한 한 완전한 정보와 다른 모든 관련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3조】 1. 이 협약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기관은 강제근로의 사용을 규제하는 원칙하고도 상세한 규칙을 공포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규칙은 특히 강제근로를 강요받는 자로 하여금 근로조건에 관한 모든 이의를 당해 기관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이의가 심사되고 고려되도록 확보하는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4조】 임의노동의 감독을 위하여 설치된 현재의 근로감독기관의 권한을 강제근로의 감독에 미치도록 확장함에 의해서, 또는 다른 어떠한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강제근로의 사용을 규율하는 규칙이 입밀히 실시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경우에 적당한 조치를 집행하여야 하며, 강제근로를 강요받는 자에게 이러한 규칙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도 역시 집행하여야 한

다.

【제25조】 강제근로의 불법적인 강요는 형사상의 범죄로 치벌되어야 하며, 또한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벌이 실제로 적당하고도 입격하게 실시되도록 확보해야 하는 것은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의 의무이다.

【제26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회원국이 대내적 관할사항에 관한 의무를 수락할 권리를 가지는 한 그 국가의 주권, 관할, 보호, 종주권, 후견 또는 지배하에 놓여 있는 관할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기로 약속한다. 다만, 회원국이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35조의 규정을 원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는 선언을 당해 국가의 비준에 부가하여야 한다.

(기) 당해 회원국이 수정을 가함이 없이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지역

(나) 당해 회원국이 수정을 위하여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지역 및 수정의 구체적인 내용

(다) 당해 회원국이 그 결정을 유보하는 지역

2. 이러한 선언은 비준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하며 비준의 효력을 가진다. 어떠한 회원국도 선언에 있어서 本條 (나), (다)호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유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 선언에 의해 취소할 수 있다.

【제27조】 비준 : 표준최종규정

【제28조】 효력발생 : 표준최종규정

【제29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고 : 표준최종규정

【제30조】 폐기. 본협약의 효력발생후 10년이 지나면 5년마다 폐기할 수 있도록 표준절차규정 제3조 제2항의 10년을 5년으로 한다.

【제31조】 개정의 심의 : 표준최종규정

【제32조】 개정협약의 효력 : 표준최종규정

【제33조】 정본 : 표준최종규정

제105호 협약

強制勤勞의廢止에관한協約

* 효력발생 : 1959년 1월 17일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사무국 이사회가 1957년 6월 5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40차 회기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의제 4인 강제근로문제를 심의하고,
1930년 강제근로 협약의 규정에 유의하고,

1926년 노예협약이 강제근로가 노예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1956년 노예제도, 노예거래 및 노예제도에 유사한 제도 및 관행의 폐지에 관한 보충협약이 부채노예제 및 농노제의 완전한 폐지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

1949년 임금보호협약이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고용을 종료시킬 수 있는 실질적 가능성을 박탈하는 형태의 지급수단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유의하고,

국제연합 헌장에 규정되어 있고 세계인권선언에 선언되어 있는 인권의 침해가 되는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의 폐지에 관하여 그 이상의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57년 강제근로폐지 협약이라고 하는 다음의 협약을 1957년 6월 25일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이하에서 규정한 수단, 제재 또는 방법에 의한 모든 종류의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이를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가) 정치적 견해 또는 기존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제도에 사상적으로 반대하는 견해를 가지거나 발표하는 것에 대한 제재 및 정치적 억압방법 또는 교육방법

(나)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동원하거나 이용하는 방법

(다) 노동규율의 수단

(라) 파업 참기에 대한 제재

(마) 인종적·사회적·민족적 또는 종교적 차별내우의 수단

[제 2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제1조에서 규정한 강제근로의 즉각적이고도 완전한 폐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제 3조] ~ [제 10조] 표준최종규정

제100호 협약

同一價值 勤勞에 대한 男女勤勞者의 同一報酬에 관한 協約

* 효력발생: 1953년 5월 23일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사무국 이사회가 1951년 6월 6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34차 회기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의제 7인 동일가치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의 원칙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51년 동일보수 협약이라고 하는 다음의 협약을 1951년 6월 29일 채택한다.

[제 1조]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가) '보수'라 함은 통상적, 기본적 또는 최저의 임금, 급료 및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그 고용을 이유로 현금 또는 헌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모든 추가적 급여를 포함한다.

(나)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라 함은 성별에 따른 차별없이 정해지는 보수율을 말한다.

[제 2조] 1. 회원국은 보수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에 적합한 수단에 의하여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의 원칙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도록 촉진하고 이 방법과 양립하는 한 그 적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이 원칙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가) 국내법령

(나) 합법적으로 수립되거나 인정된 임금결정제도

(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단체협약

(라) 위의 각종 수단의 배합

- 【제3조】 1. 수행되는 근로를 기초로 하는 직무의 객관적인 평가를 촉진하는 조치가 이 협약의 규정의 실시에 효과적인 경우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평가를 위하여 채택하는 방법은 보수율의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기관 또는 보수율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다.
3. 성별과 무관하게 이러한 객관적 평가에서 발생하는 근로 수행상의 차이에 상응하는 근로자간의 보수율의 차이는 동일가치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 의 동일보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 【제4조】 회원국은 이 협약의 규정의 실시를 위하여 관계있는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와 적절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제6조】 【제9조】 ~ 【제14조】 표준최종규정

【제7조】 【제8조】 비본토지역 적용에 관한 선언

제111호 협약

雇傭 및 職業上 差別待遇에 관한 協約

* 효력발생: 1960년 6월 15일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사무국 이사회가 1958년 6월 4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42차 회기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의제 4인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필라델피아선언이 모든 인간은 인종, 신조,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 존엄, 경제적 안정, 기회균등의 조건하에서 물질적 복지와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확인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차별대우는 세계인권선언이 선언한 권리에 대한 침해라는 점을 고려하여,
1958년 차별대우(고용 및 직업) 협약이라고 하는 다음의 협약을 1958년 6월 25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에서 '차별대우'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 (기) 인종, 피부색, 성,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국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차별, 배제 또는 우대로서, 고용 또는 직업상 기회 또는 대우의 균등을 파괴하거나 저해하는 효과가 있는 것
(나) 고용 또는 직업상 기회 또는 대우의 균등을 파괴하거나 저해하는 효과가 있는, 어디의 차별, 배제 또는 우대로 당해 회원국이 대표적인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 및 다른 적당한 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
2. 고유한 요건에 의한 특정한 업무에 관한 차별, 배제 또는 우대는 차별대우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3. 이 협약에서 '고용' 및 '직업'이라 함은 직업훈련을 받는 것, 고용되는 것 및 특정직업에 종사하는 것 및 고용조건을 말한다.

[제 2 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회원국은 고용 및 직업에 관한 차별대우를 철폐하기 위하여 국내사정 및 관행에 적합한 방법으로 고용 또는 직업에 관한 기회 및 대우의 균등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방침을 명확히 하고 또한 이에 따를 것을 약속한다.

[제 3 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회원국은 국내사정 및 관행에 적합한 방법으로 다음의 사항을 약속한다.

(가) 이러한 방침의 승인 및 준수를 촉진하는 데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 그리고 다른 적당한 단체의 협력을 구할 것

(나) 이러한 방침의 승인 및 준수를 확보하는데 적당한 법령을 제정하고 그 러한 교육계획을 촉진할 것

(다) 이러한 방침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모든 법령의 규정을 폐지하고, 행정상의 모든 명령 또는 관행을 수정할 것

(라) 국가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고용에 관하여 이러한 방침에 따를 것

(마) 국가기관이 감독하는 職業輔導, 직업훈련 및 직업소개의 활동에 관하여 이러한 방침의 준수를 확보할 것

(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연차보고에 이러한 방침에 따라 실시한 조치 및 그 결과를 기재할 것

[제 4 조] 국가의 안전을 저해하는 활동에 관하여 협의를 받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그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차별대우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개인은 국내의 관행에 따라 설치된 권한있는 기관에 제소할 권리를 가진다.

[제 5 조] 1. 국제노동기구 총회가 채택한 다른 협약 또는 권리에서 정하는 보호 또는 원조에 관한 특별조치를 차별대우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2. 모든 회원국은 대표적인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그 단체와 협의하여 성, 연령, 폐질, 부양책임 또는 사회적·문화적 지위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특별한 보호 또는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특정한 욕구의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특별한 조치를 차별대우로 보지 아니한다고 결정할 수 있다.

[제 6 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에 따라 비본토 지역에 이 협약을 적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 7 조]~[제 14조] 표준최종규정

제138호 협약

就業의 最低年齡에 관한 協約

* 효력발생 : 1976년 6월 19일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사무국 이사회가 1973년 6월 6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58차 회기
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의제 4인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
하고,

1919년 최저연령(공업) 협약, 1920년 최저연령(해상) 협약, 1921년 최저연
령(농업) 협약, 1921년 최저연령(石炭夫 및 火夫) 협약, 1932년 최저연령(비공
업부문 고용) 협약, 1936년 최저연령(해상)개정 협약, 1937년 최저연령(공업)
협약(개정), 1937년 최저연령(비공업부문 고용) 협약(개정), 1959년 최저연령
(漁船員) 협약, 1965년 최저연령(쟁내작업) 협약의 규정에 유의하며,

아동근로의 전면적인 철폐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한된 경제부문에 한하여 적
용되고 있는 현존하는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각종 협약을 점진적으로 대체하
는 일반적 협약을 작성할 시기가 도래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73년 최저연령 협약이라고 하는 다음의 협약을 1973년 6월 26일에 채택
한다.

【제1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회원국은 아동근로의 효과적인 철폐를 확보
하고, 또한 취업의 최저연령을 연소자의 심신의 완전한 발달에 가장 적합한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높일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정책을 수행할 것을 약
속한다.

【제2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그 비준시 첨부하는 선언에서 자국
영토 및 자국의 영역내에서 등록된 운송수단에 있어서의 취업의 최저연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최저연령에 달하지 아니한 자를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직업에도 취업시키서는 아니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그후 추가적 선언에 의해 이전에 명시한 인
령보다 높은 최저연령을 명시하는 취지를 국제노동사무총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한 최저연령은 의무교육 종료연령을 하회하여서
는 아니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15세를 하회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 및 교육기관이 충분히 빌달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단체
와 협의한 후 처음부터 최저연령을 14세로 명시할 수 있다.

5.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최저연령을 14세로 명시한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가) 제4항의 규정을 원용하는 이유가 존속한다는 사실

(나) 제4항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를 일정기일 이후에는 포기한다는 사실

【제3조】 1. 업무의 성질에 따라 또는 업무가 행해지는 상황에 따라 연소자의
건강, 안전 또는 도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취업할 수 있는 최저연
령은 18세를 하회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업무는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
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와 협의한 후 국내법령 또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정해져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법령 또는 권한있는 기관은 관련 사용자
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와 협의한 후 당해 연소자
가 그 건강, 안전 및 도덕에 관하여 충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것과 관련
활동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특별교육 또는 직업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조건으
로 16세부터의 취업을 인정할 수 있다.

【제4조】 1. 권한있는 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
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와 협의하여 특수하고도 실질적인 적용
상의 문제가 발생한 제한된 종류의 업무를 이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헌장 제22조에 의거하여 제출한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의 보고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한 종류를 그 제외사유를 첨부하여 명시하여야 하며, 후속 보고에서 제외한 종류에 관한 자국의 법률과 관행의 현황 및 그 종류에 관하여 협약이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가 또는 시행하려고 하는가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제3조에 규정한 업무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되어서는 아니된다.

[제5조] 1. 경제 및 행정기관이 충분히 발달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그 단체와 협의한 후 시행 당시부터 이 협약의 적용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을 원용하는 각 회원국은 그 비준시 첨부하는 선언에서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제활동부문 또는 기업의 종류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이 협약은 최소한 다음의 분야에는 적용되어야 한다. 광업 및 체석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 및 상수도·위생사업, 운수·창고 및 통신사업, 農園 및 주로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생산하는 기타의 농업부문 사업장. 다만, 지역적 소비를 위하여 생산하는 가족기업 및 소규모 기업으로 임금근로자를 상시적으로 고용하지 아니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4.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의 적용범위를 제한한 회원국은,
(가) 이 협약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 경제활동부문에 있어서의 연소자 및 이동의 업무에 관한 일반적 현황 및 이 협약의 적용범위를 확장하기 위하여 취한 진전사항을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국제노동사무총장에게 송부한 선언으로 언제라도 이 협약의 적용범위를 공식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

[제6조] 일반교육, 직업교육 또는 기술교육을 위한 학교 기타 훈련기관에서 아동 및 연소자에 의하여 행해진 근로 또는 기업에서 14세 이상의 자에 의해 행해진 근로에 대하여는,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와 협의한 후 권한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행해지고 또한 다음 각호의 과정의 불가결한 일부분인 경우에는 이 협약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학교 또는 훈련기관이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교육과정 또는 훈련과정
- (나) 주로 또는 전면적으로 기업내에서 실시되는 훈련과정으로서 권한있는 기관이 승인한 것
- (다) 직업 또는 훈련과목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도과정

[제7조] 1. 국내법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輕勞動에 관하여는 13세 이상 15세 미만 자의 취업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그러한 자의 건강 또는 발육에 유해할 우려가 없을 것, 그리고
- (나) 그러한 자의 학교 출석 또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인정된 직업지도나 훈련과정의 참가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또는 학습능력을 손상시키지 아니할 것

2. 국내법령은 제1항 (개)호 및 (나)호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에 관하여는 15세 이상의 자로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의 취업을 인정할 수 있다.

3. 권한있는 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취업이 인정되는 경제활동을 결정하고, 그러한 취업의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4항의 규정을 원용하는 회원국은 그 원용을 계속하는 동안 제1항의 13세 및 15세의 연령을 12세 및 14세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제2항의 15세의 연령을 14세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 1. 권한있는 기관은 예술공연 참가와 같은 목적을 위한 것에 관하여는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와 협의한 후 제2조에서 규정하는 취업의 금지에 대한 예외를 개별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취업시간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 1. 권한있는 기관은 이 협약의 제규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별칙조항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국내법령 또는 권한있는 기관은 이 협약을 실시하기 위한 규정을 준수할 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정하여야 한다.

3. 국내법령 또는 권한있는 기관은 사용자가 이용·보관하여야 하는 명부 기타 서류에 관하여 정하여야 한다. 그 명부 또는 서류는 당해 사용자가 사용하거나 또는 당해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하는 18세 미만의 자의 성명 및 연령 또는 정당하게 증명될 수 있는 한 생년월일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10조] 1. 이 협약은 이 조에서 규정한 조건하에서 1919년 최저연령(공업) 협약, 1920년 최저연령(해상) 협약, 1921년 최저연령(농업) 협약, 1921년 최저연령(석탄부 및 화부) 협약, 1932년 최저연령(비공업부문 고용) 협약, 1936년 최저연령(해상)개정 협약, 1937년 최저인령(공업) 협약(개정), 1937년 최저연령(비공업부문 고용) 협약(개정), 1959년 최저연령(어선원) 협약 및 1965년 최저연령(개내작업) 협약을 개정한다.

2. 이 협약이 효력을 갖게 된 후에도 1936년 최저연령(해상)개정 협약, 1937년 최저연령(공업) 협약(개정), 1937년 최저인령(비공업부문 고용) 협약(개정), 1959년 최저연령(어선원) 협약, 1965년 최저연령(개내작업) 협약은 비준 가능하다.

3. 1919년 최저연령(공업) 협약, 1920년 최저연령(해상) 협약, 1921년 최저연령(농업) 협약 및 1921년 최저연령(석탄부 및 화부) 협약은 모든 회원국들이 이 협약의 비준에 의하여 또는 국제노동사무총장에게 통지하는 선언에 의하여 그러한 협약의 장래 비준가능성을 봉쇄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더 이상의 비준을 할 수 없다.

4. 이 협약의 효력발생을 조건으로 하여,

(가) 1937년 최저연령(공업) 협약(개정)을 비준한 회원국이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고, 또한 이 협약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5세를 하회하지 아니한 최저연령을 명시한 경우에는 1937년의 최저연령(공업) 협약(개정)은 당연히 즉시 폐기된다.

(나) 1932년 최저연령(비공업부문 고용) 협약(개정)에서 규정한 비공업부문 고용에 관하여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이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 경우에는 1932년 최저연령(비공업부문 고용) 협약(개정)은 당연히 즉시 폐기된다.

(다) 1937년 최저연령(비공업부문 고용) 협약(개정)에 명시된 비공업부문 고용에 관하여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이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고,

또한 이 협약의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5세를 하회하지 아니하는 최저연령을 명시한 경우에는 1937년 최저연령(비공업부문 고용) 협약(개정)은 당연히 즉시 폐기된다.

(라) 1936년 최저연령(해상)개정 협약에 명시된 해상에서의 고용에 관하여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이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고, 또한 이 협약의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5세를 하회하지 아니하는 최저연령을 명시하거나 또는 회원국이 이 협약의 제3조의 규정을 해상고용에 관하여 적용할 것을 명시한 경우에는 1936년 최저연령(해상)개정 협약은 당연히 즉시 폐기된다.

(마) 1959년 최저연령(어선원) 협약에 명시된 해상이업에서의 고용에 관하여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이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고, 또한 이 협약의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5세를 하회하지 아니한 최저연령을 명시한 경우에는 1959년 최저연령(어선원) 협약은 당연히 즉시 폐기된다.

(바) 1965년 최저연령(개내작업)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이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고, 또한 1965년 최저연령(개내작업) 협약에 따라 명시한 연령을 하회하지 아니한 최저연령을 이 협약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산에 있어서 개내근로에 관하여 적용할 것을 명시한 경우 1965년 최저연령(개내작업) 협약은 당연히 즉시 폐기된다.

5. 이 협약의 효력발생을 조건으로 하여,

(가) 이 협약상 의무의 수락에 의하여 1919년 최저연령(공업) 협약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된다.

(나) 농업에 관한 이 협약의 의무수락에 의하여 1921년 최저연령(농업) 협약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된다.

(다) 해상고용에 관한 이 협약의 의무수락에 의하여 1920년 최저연령(해상) 협약은 제10조 및 1921년 최저연령(석탄부 및 화부) 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된다.

[제 11조] ~ [제 18조] 표준최종규정